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II)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9.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II)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II)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9.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공동연구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수집 및 정리: 서주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9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음
 -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도 성장기를 거쳐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성장의 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었다는 비판도 있음

- 개방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개도국·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수출에만 의지할 수는 없음
 - 또한 경제 생태계가 대기업 위주로만 구성되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산업계에 새롭게 진입하여 성장함으로써 견전하고 활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혁신창업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더라도 그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자금 조달을 비롯한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와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들 신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의 하나임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특정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그러나 동 조세특례 조항은 2016년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국세청 확인 결과 지금까지 한 건의 이용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효과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일몰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함
 - 특히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동 조항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바, 이들에게도 혜택을 허용할 경우에 대한 예상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제도 이용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인지도 조사에서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71.2%로 나타났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라는 응답비율이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질문에서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제도 이용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은 창업 초기에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연구 인력이 성과물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벤처기업은 대부분 기술 기반의 연구원들 위주로 재무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세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제도를 인지하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 43%였으며,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동 조항을 검토해 보았다는 응답이 약 62%로 나왔으나,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 제도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 58%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반응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비록 이용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제도가 있는 것 자체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임
-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제도를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즉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과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은 동 조항에 대상 자격 등 부수되는 조건이 맞지 않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답변임
 -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든가,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이러한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에 대비하여 과세이연된 양도세의 현재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동 조항을 인지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아니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치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기타소득세 대

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세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 즉 세제혜택에 따른 기대수익이 얼마가 될지는 출자시점에서 불확실함

- 미래 주식 가치의 상승이 클수록 기대되는 감면세액의 현재 가치가 커지겠으나, 미래 주식 가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수익보다는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자체가 매력적인 출자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라서 현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동 조항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함

- 그것은 벤처기업은 대부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기 때문임
- 즉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보다 자기 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술 분야에 대한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재산권을 가진 제3자의 출자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을 가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자기 기업에 현물출자하여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출자 유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함
 - 이 경우 대기업 또는 자본력이 큰 회사에서 벤처기업을 만들어 제도를 오용할 소지도 있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유인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동 제도는 앞으로도 이용도가 전무하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단 설문조사와 심층평가 인터뷰에서는 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크고, 현재 제도 이용이 안 되는 이유로는 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②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봄

- 이러한 개선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야 할 것임

【대안 1】 우선적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되,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함

- 설문조사 결과, 제도 자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통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미 컨설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one-stop service와 같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편하게 한군데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여타의 홍보 수단을 확보하여 벤처·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부족 등 그들이 처한 상황 또는 행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단기적으로는 홍보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만큼, 시행만 3년 만에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홍보의 효과를 점검한 후 일몰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임

【대안 2】 현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되, 오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역시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그 효과를 점검하고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함

- 동 조항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가운데 ‘대상이 아니라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줌

- 산업재산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은 거의 없으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제3자의 산업재산을 출자받는 것보다 차라리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가치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신의 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이 제3자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 특수관계인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을 적용한다면, 동 조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벤처기업에 현물을 출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이나 부적절한 가치 평가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일몰연장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성장, M&A 단계 등 각 단계마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음
- 벤처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 보유, 양도 단계별로 많은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취지는 좋으나, 이미 수많은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부수 조건이 복잡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 동 조항이 이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단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되, 여전히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임

목 차

I. 서 론	15
II. 우리나라 벤처산업 현황	19
1.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현황	21
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의	21
나. 벤처기업 확인제도	24
다. 벤처기업 현황	27
라. 벤처캐피탈 현황	37
2.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41
III.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7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49
가. 창업단계	49
나. 성장단계	50
다. 인수·합병단계	52
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58
가. 투자단계	58
나. 보유단계	59
다. 양도단계	60
3. 「조특법」 §16의5 과세특례제도	64
가. 산업재산권 현황	64
나. 제도 내용	66
다. 제도 연혁	68
라. 제도 현황	69

IV. 설문조사	71
1. 설문조사 배경 및 설계 내용	73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73
나. 조사 설계	73
다. 조사 내용	74
라. 응답자 특성	75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77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인지 여부	77
나. 고인지자의 제도 이용 검토 여부	77
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비이용 이유	78
라.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79
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효용성	79
바.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	80
사. 제외 대상 폐지가 제도 활성화에 도움되는 이유	80
아.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81
자.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	82
차.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	82
카.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	82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83
가. 응답 기업 및 응답자 특성	83
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용 실태	84
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조세 제도 접근성	99
4.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07
가. 제도 인지 수준 및 배경	107
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효과성	108
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한	110
라. 제도 활성화 방안	111
5.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113

V. 현상 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	121
VI. 결 론	129
참고문헌	133
<부 록>	135

표 목 차

<표 II-1> 조합유형별 비교	24
<표 II-2> 벤처기업 확인 요건 내용	26
<표 II-3>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28
<표 II-4>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2019년 7월 기준)	29
<표 II-5>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2019년 7월 기준)	30
<표 II-6>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2019년 7월 기준)	31
<표 II-7> 지역별·업종별 벤처기업 현황(2019년 7월 기준)	31
<표 II-8> 확인기관별 벤처기업 현황	32
<표 II-9>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34
<표 II-10>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추이	35
<표 II-11>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36
<표 II-12>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 추이	37
<표 II-13> 조합 수 추이	37
<표 II-14> 신규 조합원 구성 추이	38
<표 II-15> 신규투자 업체 수 및 금액 추이	38
<표 II-1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및 비중	39
<표 II-17>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추이	39
<표 II-18> 연도별 LLC 현황	40
<표 II-19> 벤처캐피탈별 투자실적(상위 10개사)(2018년 기준)	40
<표 II-20> 벤처캐피탈별 펀드결성실적(상위 10개사)(2018년 기준)	41
<표 II-21>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관련 로드맵(2019년 예산안 기준)	42
<표 II-22> 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예산안(2019년 예산안 기준)	43
<표 II-23>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예산안(2019년 예산안 기준)	43
<표 II-24> 창업지원사업 상위 10개 예산 규모 내역(2019년 예산안 기준)	44
<표 II-25> 벤처기업 우대제도 현황	45

<표 I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56
<표 III-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현황	63
<표 III-3>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평균)	64
<표 III-4> 산업재산권 현황(2017년 평균 보유 기준)	65
<표 III-5> 산업재산권 보유(평균) 현황 추이	66
<표 III-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제도 연혁	69
<표 IV-1> 조사 설계	74
<표 IV-2> 설문조사 세부 항목	74
<표 IV-3> 심층 인터뷰 세부 항목	75
<표 IV-4> 응답자 특성	75
<표 IV-5> 심층 인터뷰 응답자 특성	76
<표 IV-6>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인지도	77
<표 IV-7> 고인지자의 제도 이용 검토	77
<표 IV-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비이용 이유	78
<표 IV-9>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79
<표 IV-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효용성	79
<표 IV-11>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	80
<표 IV-12>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80
<표 IV-1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81
<표 IV-14>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관심 정도	81
<표 IV-15>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	82
<표 IV-16>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이용 비활성화 이유	83
<표 IV-17>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 종류	83
<표 IV-18> 제도 인지 여부	85
<표 IV-19> 제도 이용 검토 여부	86
<표 IV-20> 제도 비이용 이유	87
<표 IV-21>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89
<표 IV-22> 제도 효용성(전체)	91
<표 IV-23> 제도 효용성(고인지)	92

<표 IV-24>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전체)	94
<표 IV-25>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고인지)	95
<표 IV-26>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전체)	96
<표 IV-27>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고인지)	96
<표 IV-28>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전체)	97
<표 IV-29>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고인지)	98
<표 IV-30>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관심 정도(전체)	100
<표 IV-31>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관심 정도(고인지) ..	101
<표 IV-32>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전체)	102
<표 IV-33>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고인지) ..	103
<표 IV-34>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전체) ..	105
<표 IV-35>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 (고인지)	106
<표 IV-36>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고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들의 복수응답 분포 ..	114
<표 IV-37>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복수응답 분포	115
<표 IV-38> 제도 비인지를 원인으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복수응답 분포	116
<표 IV-39> 동 조항 이용 실적 저조에 대한 요인 응답 분포	118
<표 IV-40>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제도 비활성화 요인 응답 분포	118
<표 IV-41> 동 조항 및 전반적 지원제도 이용 부족 요인 간의 관계 분포	119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29
[그림 II-2] 벤처기업 유형별 비중(2019년 7월 기준)	30
[그림 II-3]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33
[그림 II-4]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비교	34
[그림 II-5]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률 비교	35
[그림 IV-1] 제도 인지 여부	84
[그림 IV-2] 제도 이용 검토 여부	87
[그림 IV-3]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90
[그림 IV-4] 제도 효용성(전체)	92
[그림 IV-5]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전체)	93
[그림 IV-6]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전체)	98
[그림 IV-7]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관심 정도(전체)	99
[그림 IV-8]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전체)	104
[그림 IV-9]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전체) ..	104

I. 서론



I. 서론

-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도 성장기를 거쳐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성장의 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었다는 비판도 있음

- 개방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개도국·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수출에만 의지할 수는 없음
 - 또한 경제 생태계가 대기업 위주로만 구성되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산업계에 새롭게 진입하여 성장함으로써 견전하고 활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혁신창업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더라도 그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자금 조달을 비롯한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와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들 신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 규모나 종류에 있어서 오히려 과다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수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혜택이 미미하다거나 전담 인력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그러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의 하나임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특정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만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세청에서 확인한바에 따르면, 동 지원제도를 신청한 벤처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에서는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동 조세특례 조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음
 - 특히 현재 배제되어 있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도 동 조항의 혜택을 허용할 경우에 대한 예상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우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제Ⅳ장에서 설문조사 및 FGI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 및 결론을 수록하였음

Ⅱ.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현황



II.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현황

1.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현황¹⁾

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의

1) 벤처기업 정의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및 지정한 모든 벤처기업체를 의미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1) 김재진·기은선(2017), pp. 21~41 내용을 요약 및 업데이트함

- 김진수·김재진(2000)은 벤처기업을 일반적으로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라 정의함

- 김세중(2008)은 벤처기업에 대해 4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
 - 소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독자의 존재이유를 가지는 경우
 - 경영자 자신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경우
 - 고수익 및 급성장의 특성을 가진 기업군의 경우

-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으며, 국가마다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²⁾
 -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사업이지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을 의미함
 -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말함
 - OECD 회원국의 경우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말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말함
 - 즉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2) 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1100.jsp>, 검색일자: 2019. 7. 10)

- 이는 벤처캐피탈 투자로 접근하는 미국의 관점과 연구개발집약형 기업으로 접근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짐³⁾

2) 벤처캐피탈 정의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험성은 크지만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벤처캐피탈을 정의함⁵⁾
 - 즉 장래성은 있지만 자본 및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용자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해 기업가와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자금 및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자본 또는 금융활동을 말함⁶⁾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크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1986년부터 국내 기존 벤처캐피탈 기업과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이 설립함⁷⁾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관리 및 기술지도 등을 주된 목적으로 기관투자자·개인·법인 등과 공동으로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 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벤처캐피탈회사를 말함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사(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용자해주는 금융회사를 말함⁸⁾
 -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만 하는 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용자업무도 가능함
 - 용자한도의 경우 소요자금의 90~100%이며 상환기간은 8~10년(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임

3) 김기완(2011), 김재진·기은선(2017), p. 21. 재인용

4) 김재진·기은선(2017), pp. 25~27 재인용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991&cid=42103&categoryId=42103>(검색일자: 2019. 7. 12)

6) 김진수·원종학(2010)

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171&cid=50305&categoryId=50305>(검색일자: 2019. 8. 13)

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722&cid=43659&categoryId=43659>(검색일자: 2019. 8. 13)

〈표 II -1〉 조합유형별 비교

구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결성주체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창투자, 신기술금융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LLC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개인,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대상	비상장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창업기업
투자의무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40% 이상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함	조합 결성 시 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아야 함		

자료: 김재진·홍범교(2015); 김재진·기은선(2017), p. 27 재인용

나. 벤처기업 확인제도

-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지정되며, 1998년 5월부터 시행됨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유형에 만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됨⁹⁾
 - 벤처투자기업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의미함
 - 창업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5천만원 이상 받은 기업

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5(검색일자: 2019. 6. 24) 및 벤처기업협회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자: 2019. 7. 10)

- 자본금 대비 투자유치 금액 10% 이상인 기업(문화콘텐츠의 경우 7%¹⁰⁾)
- 연구개발기업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의미함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100점 중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전 유형 평가), 국방기술품질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은행,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에 한함
 -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조건만 충족시키면 됨
- 기술평가보증기업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의미함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가능)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기업
 - 기업 총자산 대비 보증 또는 대출(가능) 금액이 5% 이상인 기업
 - 다만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또는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하지 않음
- 기술평가대출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순수 신용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창업 후 1년 미만인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예비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10)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 해당함

<표 II -2> 벤처기업 확인 요건 내용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p>유형 1. 벤처투자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벤처투자기관¹⁾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p>한국벤처캐피탈협회</p>
<p>유형 2. 연구개발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술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3년 이상 기업: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²⁾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업종별 상이)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p>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p>
<p>유형 3. 기술평가 보증기업 (보증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³⁾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을 신청함 	<p>기술보증기금</p>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유형 4. 기술평가대출 기업 (대출승인만으 로 벤처확인 가능)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 로 평가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³⁾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 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을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 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및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9년 5월 1일의 경우 2018년 2,3,4분기, 2019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를 의미함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에 한함. 또한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2006년 6월 4일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자료: 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home/venture/h0301/>), 검색일자: 2019. 7. 10)

다. 벤처기업 현황

1) 벤처기업 총괄 현황

□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5월 이후 벤처기업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과 같음

○ 1998년 2,042개였던 벤처기업이 200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2년 벤처버블 시기에 2,614(Δ22.9%)개의 벤처기업이 감소하였음

- 2004년부터 벤처기업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벤처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2015년 약 3만여개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현재 기준으로 36,975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이는 벤처산업 내 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일부 작용한 것에 기인함

<표 II -3>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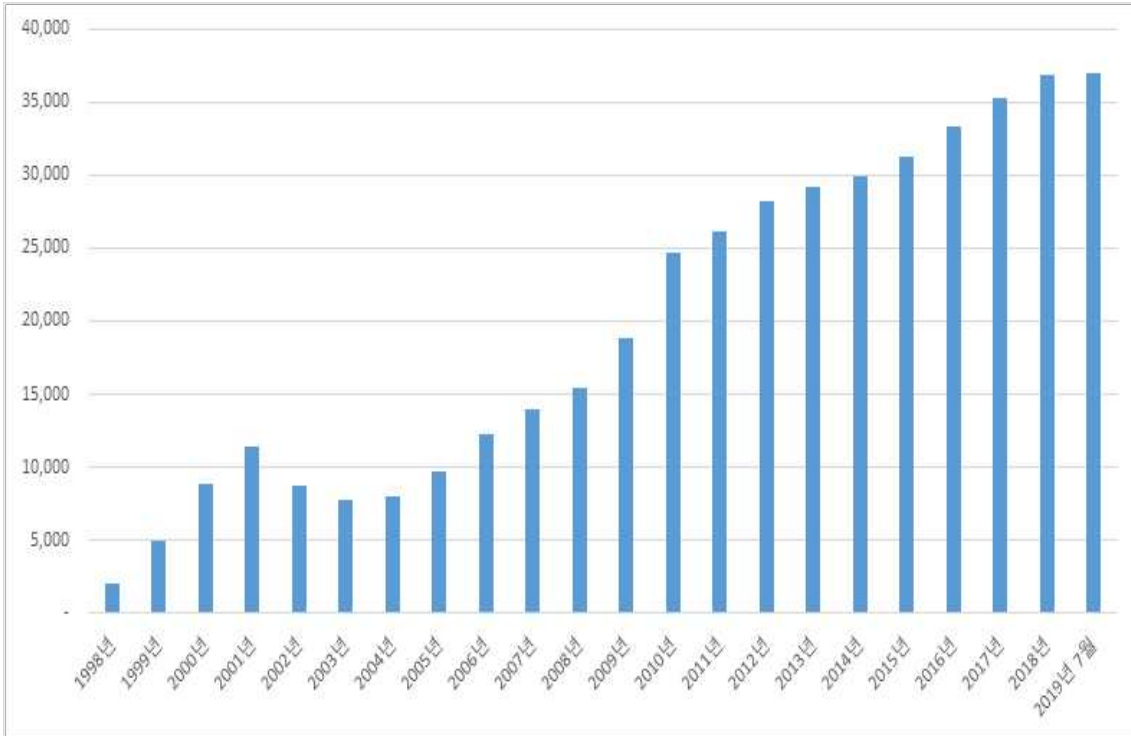
(단위: 개, %)

연도	전체누계	증감	증감률
1998년	2,042	-	-
1999년	4,934	2,892	141.6
2000년	8,798	3,864	78.3
2001년	11,392	2,594	29.5
2002년	8,778	-2,614	-22.9
2003년	7,702	-1,076	-12.3
2004년	7,967	265	3.4
2005년	9,732	1,765	22.2
2006년	12,218	2,486	25.5
2007년	14,015	1,797	14.7
2008년	15,401	1,386	9.9
2009년	18,893	3,492	22.7
2010년	24,645	5,752	30.4
2011년	26,148	1,503	6.1
2012년	28,193	2,045	7.8
2013년	29,135	942	3.3
2014년	29,910	775	2.7
2015년	31,260	1,350	4.5
2016년	33,360	2,100	6.7
2017년	35,282	1,922	5.8
2018년	36,820	1,538	4.4
2019년 7월	36,975	155	0.4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그림 II -1]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2019년 7월 기준)을 살펴보면, 총 5개 유형 중 기술평가보증기업이 27,033개로 전체 중 약 73.1%를 차지하고 그 뒤로 기술평가대출기업이 5,348개로 약 14.5%를 차지하고 있음
 - 연구개발기업은 2,568개로 약 6.9%, 벤처투자기업은 1,918개로 약 5.2%, 예비벤처기업은 108개로 약 0.3%를 차지함

<표 II -4>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2019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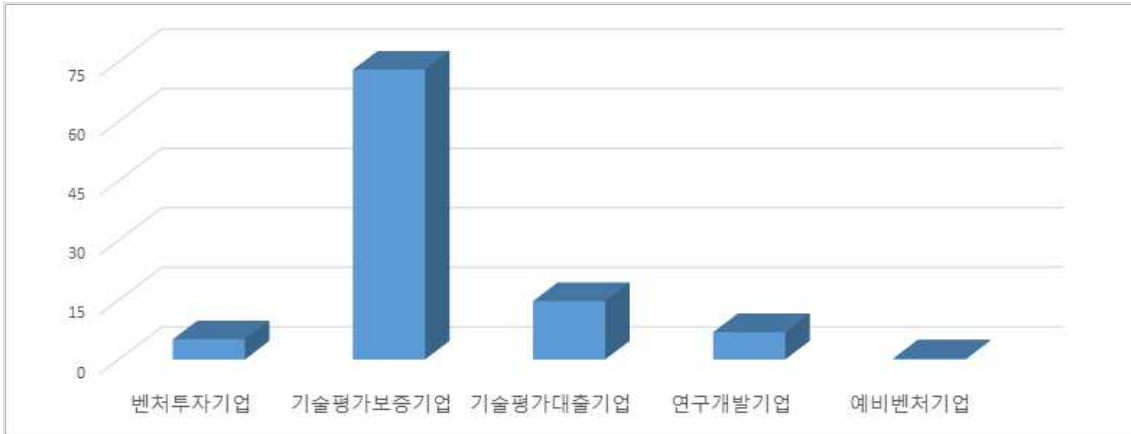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벤처기업 총계
업체 수	1,918	27,033	5,348	2,568	108	36,975
비율	5.2	73.1	14.5	6.9	0.3	10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그림 II -2] 벤처기업 유형별 비중(2019년 7월 기준)

(단위: %)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2019년 7월 기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 벤처기업 수 대비 약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서울이 약 2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 -5>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2019년 7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업체수	비율
서울	8,721	23.6
부산	2,255	6.1
울산	459	1.2
대구	1,634	4.4
경북	1,691	4.6
광주	818	2.2
전남	800	2.2
대전	1,457	3.9
충남	1,333	3.6
경기	11,480	31.0
인천	1,668	4.5
강원	695	1.9
충북	1,023	2.8
전북	792	2.1
경남	1,832	5.0
제주	193	0.5
세종	124	0.3
합계	36,975	100.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2019년 7월 기준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약 68.0%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 약 1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중소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수 기준 약 10.8% 정도¹¹⁾로 벤처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II -6>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2019년 7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및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업체 수	24,874	6,447	585	646	904	114	3,405	36,592
비율	68.0	17.6	1.6	1.8	2.5	0.3	9.3	100.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2019년 7월 기준, 지역별·업종별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업종이 약 43.4%를 차지하고 그 뒤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
-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전체의 약 79.2%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 -7> 지역별·업종별 벤처기업 현황(2019년 7월 기준)

(단위: 개)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서울	2,512	3,782	230	153	474	8	1,562	8,721
부산	1,614	263	21	54	39	2	262	2,255
울산	334	54	3	10	3	0	55	459
대구	1,277	220	10	22	22	3	80	1,634
경북	1,475	78	12	20	13	10	83	1,691
광주	623	92	5	13	21	5	59	818

11) 2017년 조사 기준 전국 전체 사업체 수는 4,019,872개이며, 이 중 제조업은 433,684개임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 임·광업	기타	합계
전남	637	48	6	26	6	7	70	800
대전	941	296	64	31	21	2	102	1,457
충남	1,156	45	15	21	7	11	78	1,333
경기	9,093	1,157	153	175	200	25	677	11,480
인천	1,402	109	16	25	34	2	80	1,668
강원	506	59	12	29	14	9	66	695
충북	863	51	18	15	12	3	61	1,023
전북	647	58	10	19	9	8	41	792
경남	1,615	73	4	24	17	10	89	1,832
제주	97	36	3	6	9	9	33	193
세종	82	26	3	3	3	0	7	124
계	24,874	6,447	585	646	904	114	3,405	36,975

자료: 벤처인, 「벤처기업현황 자료(2019년 7월)」

- 2019년 8월 8일 기준 확인기관별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이 전체 기관 중 약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약 16.9%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8> 확인기관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중소기업청	합계
업체수	28,833	6,282	1,963	0	37,078
비율	77.76	16.94	5.29	0	100.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2) 벤처기업 경영성과 및 재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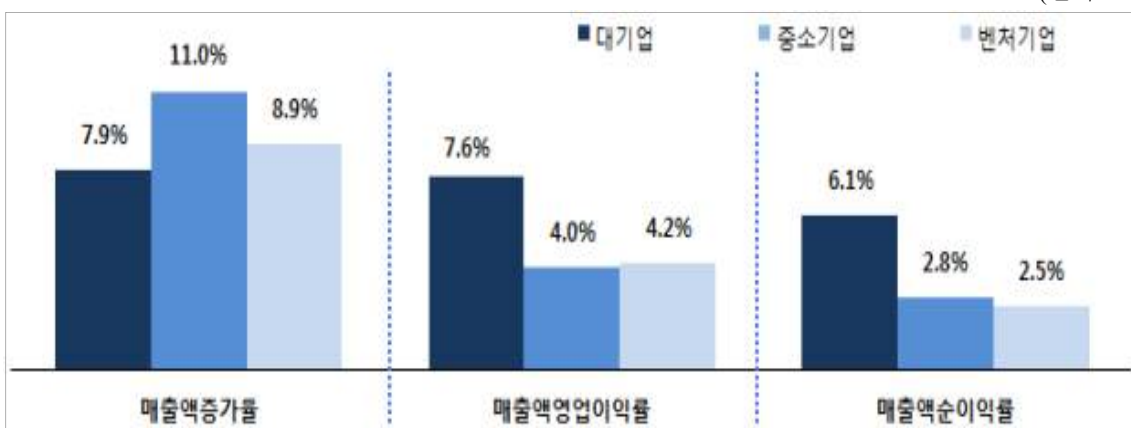
-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 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보다 높게 중소기업보다 낮게 나타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보다 낮게 중소기업보다 높게,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낮게 나타남¹²⁾(<표 II-9> 및 [그림 II-3]~[그림 II-5] 참조)

12) 한국은행, 「2017년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재인용

-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 2015년까지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까지 전체적인 매출액 증가율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2014년부터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다시 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2015년부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 분류와 상관없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벤처기업은 2012년과 2014년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2011년까지는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높았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벤처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4.0%까지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5년부터 벤처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2%대로 감소하게 됨
 - 2017년 기준 대기업 6.1%, 벤처기업 2.8%, 중소기업 2.5% 순을 기록함

[그림 II -3]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2017년 기업경영분석」;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재인용

<표 II -9>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연도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¹⁾			매출액순이익률 ²⁾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07	10.2	7.8	13.8	6.8	4.0	6.8	5.8	2.6	3.8
2008	22.0	18.1	21.2	5.8	4.1	7.0	2.6	1.6	3.5
2009	0.7	4.7	9.9	5.8	4.5	6.2	4.2	2.7	2.9
2010	15.8	13.1	22.4	6.8	4.9	5.9	5.7	3.2	4.0
2011	13.1	10.6	13.9	5.3	3.1	4.7	3.3	1.6	2.7
2012	5.0	5.3	15.8	4.7	3.1	5.7	2.9	1.8	3.4
2013	0.3	5.6	10.2	4.7	3.2	5.2	2.0	2.0	4.0
2014	△0.4	4.4	11.2	4.4	3.1	5.8	2.7	2.1	4.1
2015	△4.7	8.0	8.6	5.5	3.6	4.6	4.1	2.3	3.2
2016	△1.6	8.9	7.9	6.6	3.9	4.4	4.5	2.7	2.8
2017	7.9	11.0	8.9	7.6	4.0	4.2	6.1	2.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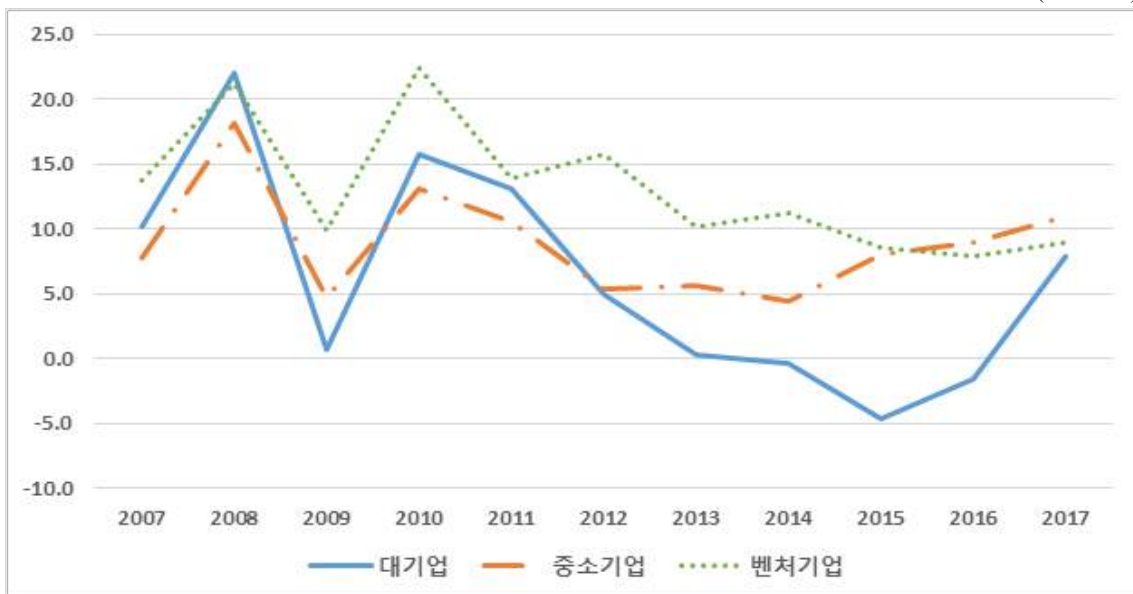
주: 1) (영업이익/매출액)×100

2) (순이익/매출액)×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 -4]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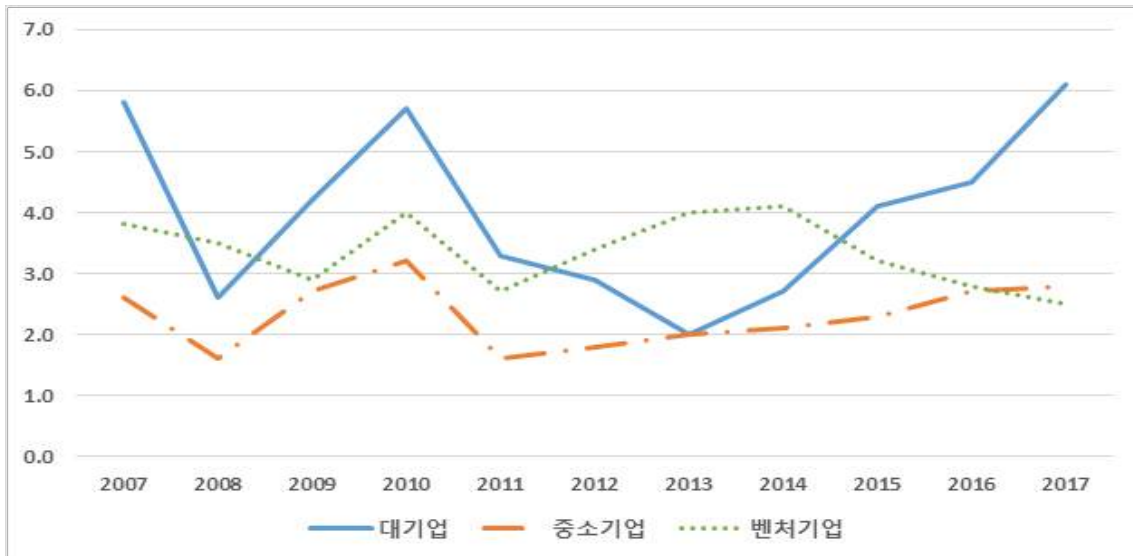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 -5]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률 비교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벤처기업의 부채비율(130.6%)이 대기업(95.5%)보다 높고 중소기업(163.2%)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 130~150%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4.6%, 7.2% 감소한 반면,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9.7%로 크게 감소함

<표 II -10>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구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07년	97.4	147.7	124.1	50.7	40.4	44.6
2008년	119.4	148.3	154.9	45.6	40.3	39.1
2009년	110.9	144.0	153.7	47.4	41.0	39.1
2010년	102.7	136.4	142.7	49.3	42.3	41.2
2011년	144.9	179.2	147.3	40.8	35.8	40.4
2012년	140.1	174.3	146.1	41.6	36.5	40.6
2013년	133.5	168.3	146.7	42.8	37.3	40.5
2014년	127.0	161.5	134.5	44.1	38.3	42.6
2015년	107.7	182.0	155.4	48.2	35.5	39.2
2016년	100.1	175.9	144.6	50.0	36.3	40.9
2017년	95.5	163.2	130.6	51.2	38.0	43.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43.4%)이 대기업(51.2%)보다 낮고 중소기업(38.0%)보다 높은 수준으로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2.4%, 4.7% 증가,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6.1% 증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64억원이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를 기록함
 - 자기자본비율은 43.4%이며, 부채비율은 130.6%임
 - 2017년 12월 기준, 지적재산권(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의 평균 특허권 보유 수는 5.8건, 실용신안 보유 수는 0.3건, 디자인권 1.0건, 상표권 1.3건, 해외산업재산권 0.3건임

<표 II -11>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억원, 명, %)

연도	벤처기업 수	평균매출액	평균종업원 수	재무상태		특허권 보유현황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2000	8,798	53.0	39.11	-	-	2.90
2001	11,392	65.6	31.60	50.4	97.6	3.20
2002	8,778	68.0	37.50	42.3	128.2	3.00
2003	7,702	73.4	39.10	38.3	142.0	3.30
2004	7,967	78.5	33.50	50.1	99.4	3.70
2005	9,732	68.8	34.80	47.4	111.2	4.10
2006	12,218	74.2	29.10	45.3	120.5	5.00
2007	14,015	53.1	30.20	44.6	124.1	3.20
2008	15,401	60.1	27.30	39.1	154.9	2.80
2009	18,893	64.5	27.00	39.1	153.7	3.00
2010	24,645	72.2	27.30	41.2	142.7	2.90
2011	26,148	70.3	25.50	40.4	147.5	3.00
2012	28,193	67.2	24.70	40.6	146.1	3.50
2013	29,067	68.4	24.70	40.5	146.7	3.90
2014	29,844	71.9	24.00	42.6	134.5	4.20
2015	31,189	69.2	23.30	39.2	155.4	4.50
2016	33,289	68.5	22.90	40.9	144.6	5.40
2017	35,187	64.0	21.70	43.4	130.6	5.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라. 벤처캐피탈 현황¹³⁾

-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2019년 기준 신규 8개사, 말소 3개사 6월 말 기준 총 138개사임
 - 2015년 115개사에서 2019년 5월 기준 138개로 23개사가 증가한 반면, 신규 등록회사의 경우 2015년 14개사에서 2017년 5개사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20개사로 증가함

〈표 II -12〉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 추이

(단위: 개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창업투자회사	115	120	121	133	138
신규 등록	14	13	5	20	8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9)

- 2019년 신규 결성된 조합 수는 67개이며, 운영 중인 조합은 843개임
 - 신규 조합 수의 경우 2015년 108개(약정금액 2조 6,205억원)에서 2018년 146개(약정금액 4조 8,223억원)으로 38개 증가함
 - 2018년 기준, 신규조합의 조합원 구성 중 금융기관이 약 26.2%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뒤로 모태펀드(19.4%), 연금 및 공제회(13.2%), 기타정책금융(13.2%), 벤처캐피탈(9.9%), 일반법인(9.7%), 기타단체(5.6%), 기타 및 외국인 등(2.8%) 순임
 - 운영 중인 조합 수의 경우 2015년 529개(약정금액 14조 858억원)에서 2018년 804개(약정금액 24조 1,576억원)으로 275개 증가함

〈표 II -13〉 조합 수 추이

(단위: 개,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신규조합 수	108	120	164	146	67
신규조합 약정금액	26,205	36,786	46,023	48,223	13,177
운영 조합 수	529	603	716	804	843
운영조합 약정금액	140,858	169,730	204,610	241,576	249,911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9)

13) 벤처캐피탈협회(2019), pp. 1~2 내용을 정리함

<표 II -14> 신규 조합원 구성 추이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모태펀드	23.2	21.7	25.1	19.4	17.3
기타정책금융	19.4	16.4	14.1	13.2	1.8
연금 및 공제회	4.4	9.2	9.5	13.2	1.4
금융기관	20.9	16.9	19.0	26.2	33.0
벤처캐피탈	12.1	13.6	11.6	9.9	16.5
일반법인	13.6	15.8	12.0	9.7	13.4
기타단체	1.2	3.5	5.9	5.6	5.8
기타 및 외국인 등	5.1	2.9	2.9	2.8	10.8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9)

- 신규투자자의 경우 2018년 1,399개사에 총 3조 4,249억원이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1,266개사, 2조 3,803억원) 43.9% 증가함
 - 업종별로는 2018년 기준으로 바이오 및 의료 부문이 24.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ICT 서비스 부문이 21.8%를 차지함
 -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는 바이오 및 의료 부문이 27.5%, 그 뒤로 ICT 서비스 부문이 21.7%를 차지함

<표 II -15> 신규투자 업체 수 및 금액 추이

(단위: 개사,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신규투자 업체 수	1,045	1,191	1,266	1,399	826
신규투자 금액	20,858	21,503	23,803	34,249	18,996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9)

<표 II -1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ICT 제조	1,463 (7.0)	959 (4.4)	1,566 (6.6)	1,489 (4.3)	544 (2.9)
ICT 서비스	4,019 (19.3)	4,062 (18.8)	5,159 (21.6)	7,468 (21.8)	4,129 (21.7)
전기·기계·장비	1,620 (7.7)	2,125 (9.9)	2,407 (10.2)	2,990 (8.7)	978 (5.1)
화학·소재	1,486 (7.1)	1,502 (7.0)	1,270 (5.3)	1,351 (3.9)	593 (3.1)
바이오·의료	3,170 (15.2)	4,686 (21.8)	3,788 (16.0)	8,417 (24.6)	5,233 (27.5)
영상·공연·음반	2,706 (13.0)	2,678 (12.5)	2,874 (12.0)	3,321 (9.7)	1,882 (9.9)
게임	1,683 (8.1)	1,427 (6.6)	1,269 (5.4)	1,411 (4.1)	615 (3.2)
유통·서비스	3,043 (14.6)	2,494 (11.6)	4,187 (17.6)	5,726 (16.7)	3,576 (18.8)
기타	1,668 (8.0)	1,570 (7.4)	1,283 (5.3)	2,077 (6.1)	1,447 (7.6)
합 계	20,858	21,503	23,803	34,249	18,996

주: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9)

□ 업력별 신규투자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7>과 같음

-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의 경우 2018년 기준 후기가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가 34.8%, 초기가 28.6%임

<표 II -17>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초기 (3년 이하)	6,472 (31.1)	7,909 (36.8)	7,796 (32.7)	9,810 (28.6)	6,272 (33.0)
중기 (3년 초과~7년 이하)	5,828 (27.9)	6,156 (28.7)	6,641 (28.0)	11,935 (34.8)	7,826 (41.2)
후기 (7년 초과)	8,558 (41.0)	7,438 (34.5)	9,366 (39.3)	12,504 (36.5)	4,898 (25.8)
합계	20,858	21,503	23,803	34,249	18,996

주: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9)

- 벤처캐피탈형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¹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8>과 같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LLC는 총 24개사로 전년 대비(20개사) 4개사가 증가함

<표 II -18> 연도별 LLC 현황

(단위: 개사)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신규	2	1	-	1	2	1	-	1	-	1	1	7	5	5	27
말소	-	-	-	1	-	-	-	-	1	-	-	-	-	1	3
누계	2	3	3	3	5	6	6	7	6	7	8	15	20	2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벤처투자 동향」

- 상위 10개사의 벤처캐피탈별 투자실적 및 펀드결성실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9>와 <표 II-20>과 같음
 - 2018년 기준 상위 10개사의 투자업체 수는 386개사이며, 투자금액은 총 1조 2,173억원임
 - 2018년 기준 상위 10개사의 펀드 수는 24개이며, 펀드결성금액은 총 1조 9,508억원임

<표 II -19> 벤처캐피탈별 투자실적(상위 10개사)(2018년 기준)

(단위: 억원, 개사)

순위	벤처캐피탈명	투자금액	투자업체 수
1	한국투자파트너스(주)	2,121	99
2	(주)소프트뱅크벤처스	1,636	32
3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1,445	38
4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393	30
5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1,135	51
6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1,094	71
7	인터베스트(주)	934	32
8	케이티비네트웍(주)	872	41
9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주)	782	39
10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761	27
소계		12,173	3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벤처투자 동향」

1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의미함

<표 II -20> 벤처캐피탈별 펀드결성실적(상위 10개사)(2018년 기준)

(단위: 개, 억원)

순위	벤처캐피탈명	펀드 수	결성금액
1	한국투자파트너스(주)	3	5,100
2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3	2,252
3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4	1,860
4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2	1,795
5	케이티비네트웍(주)	3	1,703
6	인터베스트(주)	1	1,500
7	엘비인베스트먼트(주)	1	1,456
8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3	1,407
9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주)	2	1,242
10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2	1,193
소계		24	19,5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벤처투자 동향」

2.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제도¹⁵⁾

- 창업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창업교육, 창업촉진, 재창업지원,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¹⁶⁾
 - 현재 혁신창업 활성화 정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17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 관련 로드맵은 아래의 <표 II-21>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2017년 7월 창업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함

15) 국회예산정책처(2018), pp. 224~241 내용을 요약함

16) 국회예산정책처(2018), p. 224.

- 이후 2018년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및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청년일자리 및 창업대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을 발표함

<표 II -21>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관련 로드맵(2019년 예산안 기준)

구분	주요 내용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년 11월)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등) - 창업 및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연대보증제 폐지 등)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2018년 1월)	-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 등)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모태펀드의 민간투자 후원 및 시장친화적 운용(민간제안 펀드 도입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2018년 3월)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청년일자리 및 창업대책 (2018년 3월)	-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1억원 오픈 바우처 신설 등) - 창업기업 세금 면제(청년 창업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 - 민간주도 창업지원, 지방창업 우대, 대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유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2018년 5월)	- 국민의 관심과 참여 촉진(민간참여 확대, 국민의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정책홍보 강화 및 기업가정신 제고) - 창업 성공사례 창출(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 혁신창업 성장기반 확충, 고급 기술기반 실험실 창업 촉진) -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지역 창업 주도 거점 육성, 지역 창업 기반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 신설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p. 224.

- 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22>와 같음
 - 창업상업화의 경우 2019년 예산안 기준 5,216억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1.7% 증가함
 - R&D는 2019년 예산안 기준 3,822억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32.0% 증가함
 -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자금사업은 2019년 예산안 기준 2조 6,653억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7.0% 감소함
 - 창업인프라는 2019년 예산안 기준 2,445억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1.4% 증가함

<표 II -22> 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예산안(2019년 예산안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2018년 예산(A) ¹⁾	2019년 예산안(B)	증감	
		예산	결산			B-A	(B-A)/A
창업사업화	1,647	2,461	2,389	3,682	5,216	1,534	41.7
R&D	1,930	2,069	2,069	2,896	3,822	926	32.0
정책자금 ²⁾	20,360	30,688	30,675	28,665	26,653	△2,012	△7.0
창업인프라 ³⁾	1,055	1,556	1,263	1,729	2,445	716	41.4
합계	24,993	36,774	36,396	36,973	38,136	1,163	3.1

주: 1) 2018년 예산은 추경반영 기준

2) 정책자금은 각 부처 창업기업 용자, 모태펀드 출자예산 및 보증지원을 의미함

3) 창업인프라의 경우 시설 공간 지원, 창업교육, 멘토링, 판로지원, 경진대회 등의 창업기반 조성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p. 226를 재구성함

- 2019년도 부처별·사업별 창업지원사업 예산안은 총 17개 부처 47개 세부사업 기준 총 3조 8,136억원으로 이는 전년 예산(3조 6,973억원) 대비 약 3.1%(1,163억원) 증가함
- 벤처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총 3조 5,579 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는 규모임

<표 II -23>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예산안(2019년 예산안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예산	결산			B-A	(B-A)/A
중기부	24,352	35,696	35,344	33,976	35,579	1,603	4.7
금융위	-	-	-	1,700	1,000	△700	△41.2
고용부	183	195	182	250	349	99	39.6
과기부	318	304	296	269	241	△27	△10.2
해수부	-	3	3	12	222	210	1750
산림청	53	243	243	343	206	△137	△39.9
교육부	-	120	120	150	150	0	0
문체부	51	54	54	55	120	65	119.4
특허청	-	62	62	93	97	4	4.9
농림부	20	36	34	59	95	36	61.2
국토부	1	20	18	23	32	9	39.9
농진청	4	18	18	17	17	0	0
방통위	-	10	10	10	13	3	27.5
법무부	9	9	9	9	8	△1	△6.7
여가부	-	2	1	4	4	0	0
기상청	1	1	1	2	2	0	0
방위청	1	1	1	1	1	0	0
합계	24,993	36,774	36,396	36,973	38,136	1,163	3.1

주: 1. 2018년 예산은 추경을 반영한 수치임

2. 창업지원사업이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 예산(안)만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p. 225를 재구성함

-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자금 용자사업이 2조 1,300억원으로 창업지원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뒤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3,733억원), 창업사업화지원 사업(2,950억원) 순임

<표 II -24> 창업지원사업 상위 10개 예산 규모 내역(2019년 예산안 기준)

(단위: 백만원)

순위	사업명	2019년 예산안
1	창업기업자금(용자)	2,130,000
2	창업성장기술개발	373,262
3	창업사업화지원	294,955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50,000
5	창업생태계기반구축	103,180
6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100,000
7	제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100,000
8	창업성공패키지	97,222
9	창업인프라지원	51,331
10	창업저변확대	50,563
	합계	3,550,513

주: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는 금융위원회 소관, 그 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p. 226.

□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25>와 같음

- 창업에 대해서는 교수 및 연구원 창업과 산업재산권 출자와 관련된 우대제도가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교수 및 연구원(교육 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5년 이내 휴직이 가능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근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포함함
- 세제지원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¹⁷⁾에 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¹⁸⁾, 취득세 75% 감면¹⁹⁾, 재산세 50% 감면²⁰⁾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

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항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2항

- 금융 혜택의 경우 코스닥상장 심사 시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기술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0.2% 감면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실험실 공장 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음

<표 II -25> 벤처기업 우대제도 현황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및 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2항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항
	재산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3 제2항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 및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제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자료: 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home/venture/h0302>, 검색일자: 2019. 7. 10)

Ⅲ.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Ⅲ.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²¹⁾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단계, 성장단계, 인수합병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표 III-1> 참조)

가. 창업단계

1)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²²⁾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²³⁾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벤처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등을 포함한 총 31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함
 -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²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21) 김재진·기은선(2017), pp. 45~50을 참고하여 업데이트함

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2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²⁵⁾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다만 부동산 취득 이후 5년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함

- 여기서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말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0분의 375를 경감함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및 조성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함

□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 조항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성장단계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²⁶⁾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²⁷⁾함으로써 얻은 이익²⁸⁾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27)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2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동 조항은 2017년 12월 19일 신설된 제도로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²⁹⁾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경우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³⁰⁾

-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³¹⁾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요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확정 신고 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함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함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³²⁾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허용함

다. 인수·합병단계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³³⁾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³⁴⁾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3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3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함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소득공제³⁵⁾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³⁶⁾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인 경우
-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³⁷⁾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경우
-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의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경우
 - ①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 ②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당초지분비율)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경우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3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37)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를 기준지분비율이라 함

폐지하는 경우,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일정 기간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³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받은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 통합 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³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⁴⁰⁾의 주주⁴¹⁾가 소유하는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주식교환 등)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38)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39)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함

4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함

- 벤처기업 등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경우
-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 등의 주주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5)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⁴²⁾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매각대상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일정 요건⁴³⁾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재투자)를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4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8

4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요건에 해당됨

□ 채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표 I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단계	제도명	시행연도	내용
창업 단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창업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37.5% 감면함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함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성장 단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 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가능

단계	제도명	시행연도	내용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인수 합병 단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여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 후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주주가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음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과세 이연

자료: 김재진·홍범교(2014); 김재진·기은선(2017), pp. 49~50을 참고하여 업데이트함

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⁴⁴⁾

-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투자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III-2> 참조)

가. 투자단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⁴⁵⁾

- 투자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⁴⁶⁾에 상당하는 금액⁴⁷⁾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⁴⁸⁾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및 부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조합 출자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및 부품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44) 김재진·기은선(2017), pp. 50~56을 참고하여 업데이트함

4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46)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47)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48) 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2)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⁴⁹⁾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허용함

○ 단 적용대상 중 벤처기업 대주주(30% 지분),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나. 보유단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⁵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2)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⁵¹⁾ 및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⁵²⁾

□ (배당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4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
5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 소재 및 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귀속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3)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⁵³⁾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⁵⁴⁾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다. 양도단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⁵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54)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함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업투자조합⁵⁶⁾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 시장⁵⁷⁾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⁵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5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함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⁵⁹⁾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⁶⁰⁾
-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3)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⁶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6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표 III-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현황

단계	제도명	시행연도	내용
투자단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일 또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또는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10%), 예외(30%/5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한도(종합소득금액×50%)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 및 회수 시 추징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허용함
보유단계	벤처기업 등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하여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양도단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함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자료: 김재진·홍범교(2014); 김재진·기은선(2017), pp. 54~56을 참고하여 업데이트함

3. 「조특법」 §16의5 과세특례제도

가. 산업재산권 현황

1) 2017년 현황

-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평균 8.7건으로 국내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이 평균 5.8건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 이는 2016년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수인 8.5건에 비해 약 2.4% 증가한 수준임
 - 2017년 기준 현재, 상표권 1.3건, 디자인권 1.0건, 실용신안권 및 해외 산업재산권은 각각 0.3건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출원 진행 중인 산업재산권의 경우 평균 0.7건이며 이 중 특허권이 0.6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해외 산업재산권이 0.1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이 평균 11.8건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특허권이 8.3건으로 타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3.2건으로 가장 적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산업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로는 성숙기, 업력으로는 21년 이상된 벤처기업일수록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평균)

(단위: 건수)

구분	국내 산업재산권				해외 산업재산권	합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현재 보유	5.8	0.3	1.0	1.3	0.3	8.7
출원 진행 중	0.6	0.0	0.0	0.0	0.1	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표 III-4> 산업재산권 현황(2017년 평균 보유 기준)

(단위: 개, 건수)

구분		모집단 개수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 산업 재산권	합계	
전체		35,187	5.8	0.3	1.0	1.3	0.3	8.7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의료· 정밀	2,342	8.3	0.3	0.8	1.4	1.0	11.8
		컴퓨터·반도체 ·전자부품	3,710	6.9	0.2	0.6	0.7	0.4	8.8
		통신기기· 방송기기	1,274	6.7	0.4	0.5	0.9	0.1	8.6
	일반 제조	음식료·섬유· (비)금속	8,008	5.5	0.5	1.7	1.5	0.1	9.3
		기계·제조· 자동차	8,952	6.7	0.5	1.1	1.6	0.5	10.4
	소프트 웨어·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1	0.2	0.3	1.5	0.1	6.2
		정보 통신· 방송서비스	2,352	2.3	0.0	0.4	0.5	0.0	3.2
	기타	기타	4,762	5.2	0.2	0.5	0.7	0.1	6.7
	종사 자 규모	1~9인	18,682	3.9	0.2	0.6	0.9	0.2	5.8
10~29인		11,296	6.6	0.4	1.3	1.3	0.3	9.9	
30~49인		2,560	8.1	0.6	1.6	1.2	0.2	11.7	
50~99인		1,725	10.3	0.8	1.2	2.4	0.3	15.0	
100인 이상		924	20.2	0.8	2.0	5.2	2.9	31.1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6.1	0.4	1.0	1.4	0.2	9.1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1	0.3	0.9	1.2	0.4	8.9	
	부산·경남·울산	4,353	4.3	0.3	0.9	0.8	0.2	6.5	
	대구·경북	3,330	5.4	0.4	1.1	0.7	0.4	8.0	
	광주·전라·제주	2,161	5.9	0.2	0.6	1.7	0.1	8.5	
성장 단계	창업기	403	2.1	-	0.1	0.5	0.1	2.8	
	초기성장기	6,715	3.4	0.1	0.5	1.0	0.1	5.1	
	고도성장기	18,251	5.5	0.3	0.8	1.2	0.3	8.1	
	성숙기	9,735	8.1	0.6	1.5	1.6	0.5	12.3	
	쇠퇴기	82	8.1	0.2	0.5	0.7	-	9.5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2.2	0.0	0.4	0.9	0.0	3.5	
	4~10년	18,012	3.9	0.2	0.8	1.0	0.1	6.0	
	11~20년	12,115	8.2	0.5	0.8	1.5	0.4	11.4	
	21년 이상	2,882	10.2	0.6	2.6	1.9	1.2	1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 2017년 이전 현황

- 2017년 이전 산업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권 및 상표권의 경우 보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해외산업재산권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임
 - 특허권은 2016년 기준 평균 5.4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권은 2016년 기준 평균 0.4건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함
 - 디자인권은 2016년 기준 평균 1.0건으로 전년대비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상표권은 2016년 기준 평균 1.3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함
 - 해외산업재산권은 2016년 기준 평균 0.4건으로 전년대비 동등한 수준을 유지함

<표 III-5> 산업재산권 보유(평균) 현황 추이

(단위: 건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 산업재산권	특허권	3.5	3.9	4.2	4.5	5.4
	실용신안권	0.8	0.7	0.7	0.5	0.4
	디자인권	1.4	1.0	1.0	1.0	1.0
	상표권	0.9	1.1	1.1	1.1	1.3
해외산업재산권		0.3	0.5	0.4	0.4	0.4
합계		6.9	7.2	7.4	7.5	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나. 제도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5 ‘산업재산권 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2015년 12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신설된 제도임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함

- 동 제도의 경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함
 -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
 -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해당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3항)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500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함)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과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함)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거주자가 산업재산을 현물출자하고 해당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일정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름

-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제도 연혁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사항은 <표 III-6>과 같음
 - 2015년 법률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출자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함
 - 2016년 12월에 R&D 투자 3천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및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추가함
 - 2018년 12월에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추가함
 - 현재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입법안의 발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임

〈표 III-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5 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1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허용
201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확대) 출자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에 R&D 투자 3천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및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201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조번개정
201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확대) 출자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에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라. 제도 현황

- 국세청 확인에 따르면 2019년 현재까지 ‘산업재산권 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은 벤처기업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 제도가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효과성을 검증하기보다는 벤처기업들이 동 조세특례 조항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살펴봄

IV. 설문조사



IV.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내용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사항으로 2015년에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⁶²⁾」는 2016년 이후 대상기업이 확대되었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상태임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나, 제도 이용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이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함
- 특례제도 대상인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⁶³⁾의 대표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조세 감면 목적 달성에 대한 효과성 및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에 대한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정량적인 설문조사와 정성적인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6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6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3항

<표 IV-1> 조사 설계

구분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	특례제도 대상 벤처기업 대표 및 재무담당자	특례제도 대상 벤처기업 대표 및 재무담당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	FGI, IDI
샘플 수	500명	7명
조사 기간	2019년 7월 16일~7월 23일	2019년 8월 1일~8월 7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다. 조사 내용

□ 설문조사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IV-2>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응답 기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유형 • 업종/업력 •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및 유형 • 종사자 수/매출액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지도 • 제도 이용 검토/이용 경험 • 제도의 도움 정도 • 제도 비이용 이유 • 제도 이용 의향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한 폐지에 대한 의견 •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조세 제도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도 • 조세 제도 혜택 정보 인지 경로 • 조세지원제도 비활성화 이유

□ 심층 인터뷰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IV-3> 심층 인터뷰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제도 인지 수준 및 배경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지도 • 제도 비인지 이유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에 대한 평가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한 의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요건 제한 규정의 필요성 • 자격 요건 제한 규정 폐지의 영향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활성화 방안 • 타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라.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IV-4>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00	100.0
기업유형	벤처기업	94.0
	3년 이내 중소기업	6.0
업력	3년 이내	45.4
	3년 초과~5년 이내	27.4
	5년 초과	27.2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보유	90.0
	미보유	1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48.4
	10인 이상~30인 미만	37.8
	30인 이상~50인 미만	7.2
	50인 이상~100인 미만	4.6
	100인 이상	2.0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성	167	33.4
	여성	333	66.6
직위	대표이사	64	12.8
	임원/부서장	52	10.4
	중간관리자	173	34.6
	대리/주임/사원	211	42.2
업종	제조업	341	68.2
	서비스업	112	22.4
	도소매업	28	5.6
	기타업종	19	3.8
매출액 (2018년 기준)	10억 미만	152	30.4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25.6
	30억 이상~50억 미만	44	8.8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10.4
	100억 이상	45	9.0
	모름/무응답	79	15.8

□ 심층 인터뷰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IV-5> 심층 인터뷰 응답자 특성

구분	제도 인지도	업력	산업재산권	직책	비고	
FGI	이00	중인지	3년 이내	보유	재무 담당자	(1)
	이00	비인지	3년 이내	보유	재무 담당자	(2)
	민00	비인지	3년 이내	보유	재무 담당자	(3)
	성00	비인지	3년 이내	보유	재무 담당자	(4)
	강00	비인지	3년 초과~5년 이내	보유	재무 담당자	(5)
	김00	비인지	5년 초과	보유	대표	(6)
IDI	정00	고인지	3년 초과~5년 이내	보유	재무 담당자	(7)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인지 여부

- 전체 응답자 500명 중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들어는 봤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가 23.6%,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머무름
 - 특례제도 대상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0%로 나타남

<표 IV-6>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인지도

(단위: %)

	사례 수	모른다	들어는 봤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전체	(500)	71.2	23.6	5.2

나. 고인지자의 제도 이용 검토 여부(Base: 제도 고인지자, n=26)

-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기업에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61.5%가 검토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그러나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인지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검토 과정에서 본 제도의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해 실제로 적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7> 고인지자의 제도 이용 검토

(단위: %)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6)	61.5	38.5

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비이용 이유

(Base: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도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n=450)

- 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의 응답비율이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심층 인터뷰 결과 벤처기업은 대부분 기술 기반의 연구원들로 시작하므로 재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세무사에 의존도가 높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뒤이어 ‘대상자가 아니어서’(14.7%),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8.4%),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비이용 이유

(n=450, 단위: %, 중복응답)

내용	응답비율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75.1
대상자가 아니어서	14.7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8.4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6.7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4.2
현물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지 않아서	4.2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3.8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2.0
기업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6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클 것 같아서	1.6
세무 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1.1
필요성을 못 느껴서	0.9
관심이 없어서	0.7
출원 절차 중이어서	0.7
해당 사항이 없어서	0.7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받지 못해서	0.4
기타	3.6

주: 모름/무응답(0.9%)은 표에서 제외

라.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Base: 산업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 비인지 및 중인지인 경우, n=425)

- 만약 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제도 이용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결과 42.8%의 응답자가 검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13.6%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더라도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함
 - 나머지 43.5%는 잘 모른다고 응답함

<표 IV-9>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단위: %)

	사례 수	네	아니오	잘 모름
전체	(425)	42.8	13.6	43.5

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효용성

- 본 제도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57.2%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반면 23.8%의 응답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심층 인터뷰 결과 세금 혜택을 주는 취지에서는 본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제도 이용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음

<표 IV-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효용성

(단위: %)

	사례 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럭저럭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	종합	
						긍정	부정
전체	(500)	12.2	45.0	20.0	3.8	57.2	23.8

주: 모름/무응답(19.0%)은 표에서 제외

바.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Base: 산업재산을 보유한 경우, n=450)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면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37.6%의 응답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함
 - 10.0%는 폐지하더라도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표 IV-11〉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

(단위: %)

	사례 수	네	아니오	잘 모름
전체	(450)	37.6	10.0	52.4

사. 제외 대상 폐지가 제도 활성화에 도움되는 이유

(Base: 제외 대상 폐지가 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 n=169)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을 제도 이용 활성화에 폐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대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음
- 심층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은 대부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기 때문에 본 제한 조건은 벤처기업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n=169, 단위: %)

내용	응답비율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대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42.6
규제가 풀리면 대상범위가 확대되므로	16.6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므로	3.6
기업에 도움이 되서	1.8
기타	26.6

주: 모름/무응답(8.9%)은 표에서 제외

아.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세금 혜택 조정 범위 확대’(41.8%),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3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 제도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7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층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제도에 대해 벤처기업에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냄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세무사, 컨설팅업체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봄

<표 IV-1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n=500, 단위: %, 중복응답)

내용	응답비율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51.4
세금 혜택 조정 범위 확대	41.8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34.0
지원 대상 범위 확대(제외 대상 조건 완화 등)	33.8
기타	4.6

자.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한 결과 77.8%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반면 22.2%의 응답자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함

<표 IV-14>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관심 정도

(단위: %)

	사례 수	매우 관심이 있다	그럭저럭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종합	
						긍정	부정
전체	(500)	32.6	45.2	17.8	4.4	77.8	22.2

차.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

- 평소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조세제도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로 ‘세무대리인’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심층 인터뷰에서도 벤처 및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세무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표 IV-15>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
(n=500, 단위: %, 중복응답)

내용	응답비율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47.2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39.2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1.2
정부부처	15.4
협회 등 경제단체	14.8
동종업체	13.2
세무서	10.4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5.8
기타	1.8

카.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가 71.8%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심층 인터뷰 결과 벤처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된 공식 채널(one-stop service)을 만들고 기업에 홍보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남
- 뒤이어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가 제도 이용 비활성화의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남
 - 심층 인터뷰에서도 자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없고 복잡한 절차와 방대한 제출서류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표 IV-16>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이용 비활성화 이유
(n=500, 단위: %, 중복응답)

내용	응답비율
제도에 대해 정확히(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71.8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38.4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26.8
세제혜택(세금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17.0
기업 대표(대표일 경우엔 본인)가 선호하지 않음	4.2
기타	2.6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 기업 및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 기업 중 벤처기업이 470개(94.0%),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30개(6.0%)임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중 본 제도 이용 자격에 해당되는 조건⁶⁴⁾ 중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인 경우만 설문에 응답함
- 전체 응답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227개(45.4%, 중소기업 포함), 3년 초과~5년 이내 벤처기업이 137개(27.4%), 5년 초과 벤처기업이 136개(27.2%)임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450개(90.0%),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50개(10.0%)임
 -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 종류로는 특허권이 87.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상표권(34.0%), 디자인권(19.8%), 실용디자인권(13.8%)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 종류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디자인권
전체	(500)	87.6	34.0	19.8	13.8

6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3항

- 업종은 제조업이 341개(38.2%), 서비스업 112개(22.4%), 도소매업 28개(5.6%), 기타 19개(3.8%)의 분포를 보임
-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167명(33.4%), 여성이 333명(66.6%)이며 직위별로는 대표이사 64명(12.8%), 임원/부서장 52명(10.4%), 중간관리자 173명(34.6%), 대리/주임/사원 211명(42.2%)의 비율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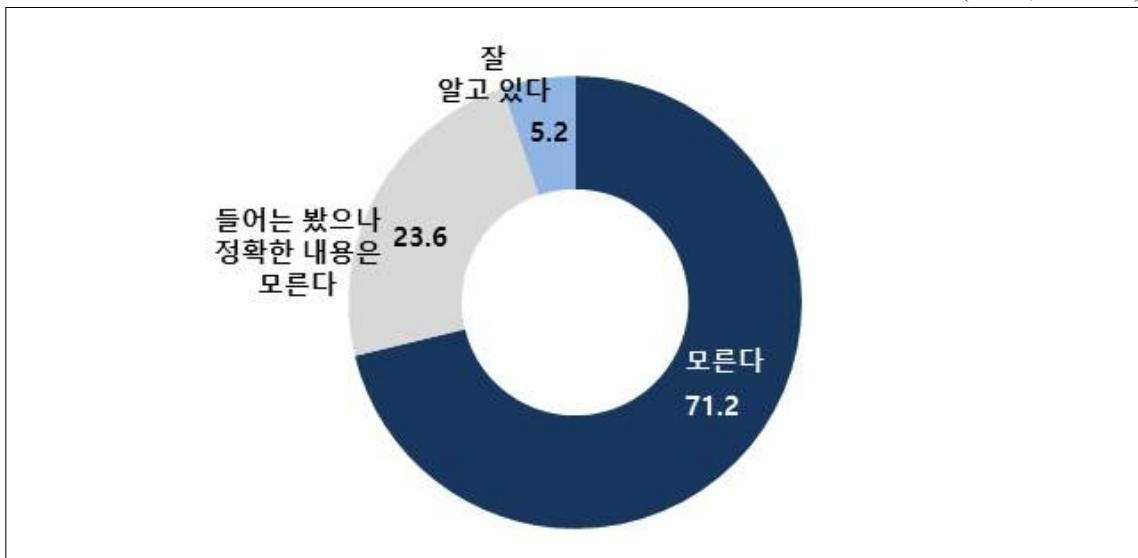
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용 실태

1) 제도 인지 여부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71.2%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응답함
 - 23.6%는 ‘들어는 봤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5.2%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0%로 나타남
 - 업력이 오래될수록 제도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재무담당자 중 임원/부서장 직급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 제도 인지 여부

(n=500, 단위: %)



<표 IV-18> 제도 인지 여부

(단위: %)

		사례 수	모른다	들어는 봤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전체		(500)	71.2	23.6	5.2
기업 유형	벤처기업	(470)	71.5	23.0	5.5
	3년 이내 중소기업	(30)	66.7	33.3	0.0
업력	3년 이내	(227)	69.6	24.2	6.2
	3년 초과~5년 이내	(137)	70.8	23.4	5.8
	5년 초과	(136)	74.3	22.8	2.9
산업 재산권	보유	(450)	71.8	22.7	5.6
	미보유	(50)	66.0	32.0	2.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42)	74.0	21.1	5.0
	10인 이상~30인 미만	(189)	71.4	24.3	4.2
	30인 이상~50인 미만	(36)	72.2	19.4	8.3
	50인 이상~100인 미만	(23)	34.8	52.2	13.0
	100인 이상	(10)	80.0	20.0	0.0
성별	남성	(167)	69.5	22.8	7.8
	여성	(333)	72.1	24.0	3.9
직위	대표이사	(64)	81.3	15.6	3.1
	임원/부서장	(52)	63.5	25.0	11.5
	중간관리자	(173)	70.5	23.1	6.4
	대리주임사원	(211)	70.6	26.1	3.3
업종	제조업	(341)	69.8	24.0	6.2
	서비스업	(112)	74.1	22.3	3.6
	도소매업	(28)	78.6	21.4	0.0
	기타업종	(19)	68.4	26.3	5.3
매출액	10억 미만	(152)	75.7	18.4	5.9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70.3	27.3	2.3
	30억 이상~50억 미만	(44)	79.5	20.5	0.0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57.7	32.7	9.6
	100억 이상	(45)	68.9	24.4	6.7
	모름/무응답	(79)	69.6	22.8	7.6

2) 제도 이용 검토 여부(Base: 제도 고인지자, n=26)

-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제도 이용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로 나타남
- 제도를 고려해 본 경험은 있으나 이용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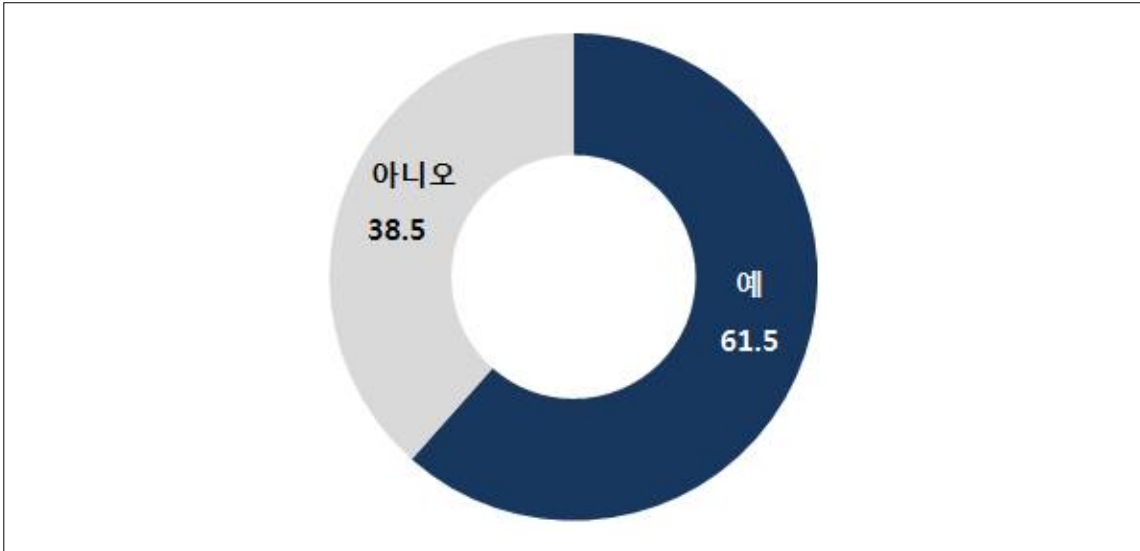
<표 IV-19> 제도 이용 검토 여부

(n=26, 단위: %)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6)	61.5	38.5
기업 유형	벤처기업	(26)	61.5	38.5
	3년 이내 중소기업	(0)	0.0	0.0
업력	3년 이내	(14)	57.1	42.9
	3년 초과~5년 이내	(8)	62.5	37.5
	5년 초과	(4)	75.0	25.0
산업 재산권	보유	(25)	64.0	36.0
	미보유	(1)	0.0	10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12)	66.7	33.3
	10인 이상~30인 미만	(8)	75.0	25.0
	30인 이상~50인 미만	(3)	66.7	33.3
	50인 이상~100인 미만	(3)	0.0	100.0
	100인 이상	(0)	0.0	0.0
성별	남성	(13)	53.8	46.2
	여성	(13)	69.2	30.8
직위	대표이사	(2)	50.0	50.0
	임원/부서장	(6)	50.0	50.0
	중간관리자	(11)	72.7	27.3
	대리주임사원	(7)	57.1	42.9
업종	제조업	(21)	66.7	33.3
	서비스업	(4)	25.0	75.0
	도소매업	(0)	0.0	0.0
	기타업종	(1)	100.0	0.0
매출액	10억 미만	(9)	55.6	44.4
	10억 이상~30억 미만	(3)	66.7	33.3
	30억 이상~50억 미만	(0)	0.0	0.0
	50억 이상~100억 미만	(5)	60.0	40.0
	100억 이상	(3)	66.7	33.3
	모름/무응답	(6)	66.7	33.3

[그림 IV-2] 제도 이용 검토 여부

(n=26, 단위: %)



3) 제도 비이용 이유

(Base: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도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n=450)

-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대상자가 아니어서’(14.7%),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8.4%),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0> 제도 비이용 이유

(n=450, 단위: %, 중복응답)

내용	응답비율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75.1
대상자가 아니어서	14.7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8.4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6.7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4.2
현물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지 않아서	4.2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3.8

내용	응답비율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2.0
기업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6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클 것 같아서	1.6
세무 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1.1
필요성을 못 느껴서	0.9
관심이 없어서	0.7
출원 절차 중이어서	0.7
해당 사항이 없어서	0.7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받지 못해서	0.4
기타	3.6

주: 모름/무응답(0.9%)은 표에서 제외

4)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Base: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 비인지 및 중인지, n=425)

- 제도를 전혀 몰랐거나 이름만 들어본 경우에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제도 이용을 검토해 봤겠는지 확인한 결과 42.8%가 검토했을 것이라고 응답함
- 13.6%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도 제도 이용을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함
- 업력이 3년 초과~5년 이내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51.9%)
-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응답자(41.5%)에 비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47.1%)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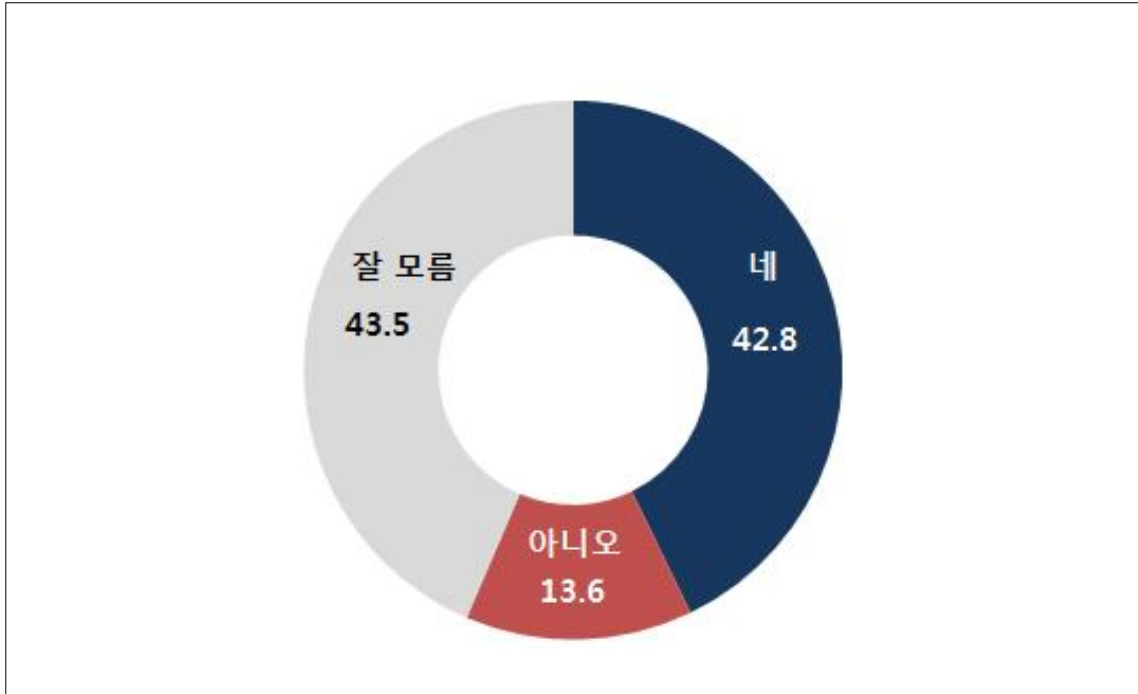
<표 IV-21>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n=425, 단위: %)

		사례 수	네	아니오	잘 모름
전체		(425)	42.8	13.6	43.5
기업 유형	벤처기업	(398)	42.5	13.1	44.5
	3년 이내 중소기업	(27)	48.1	22.2	29.6
업력	3년 이내	(166)	34.9	7.8	57.2
	3년 초과~5년 이내	(129)	51.9	15.5	32.6
	5년 초과	(130)	43.8	19.2	36.9
산업 재산권	보유	(425)	42.8	13.6	43.5
	미보유	(0)	0.0	0.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04)	44.6	12.3	43.1
	10인 이상~30인 미만	(162)	42.6	15.4	42.0
	30인 이상~50인 미만	(31)	35.5	19.4	45.2
	50인 이상~100인 미만	(18)	44.4	0.0	55.6
	100인 이상	(10)	30.0	20.0	50.0
성별	남성	(140)	40.0	18.6	41.4
	여성	(285)	44.2	11.2	44.6
직위	대표이사	(53)	49.1	11.3	39.6
	임원/부서장	(41)	36.6	17.1	46.3
	중간관리자	(146)	43.8	16.4	39.7
	대리주임사원	(185)	41.6	11.4	47.0
업종	제조업	(287)	43.9	14.3	41.8
	서비스업	(99)	40.4	15.2	44.4
	도소매업	(24)	33.3	4.2	62.5
	기타업종	(15)	53.3	6.7	40.0
매출액	10억 미만	(131)	44.3	9.9	45.8
	10억 이상~30억 미만	(110)	48.2	12.7	39.1
	30억 이상~50억 미만	(38)	55.3	15.8	28.9
	50억 이상~100억 미만	(40)	40.0	20.0	40.0
	100억 이상	(39)	35.9	12.8	51.3
	모름/무응답	(67)	29.9	17.9	52.2
제도 인지도	비인지	(323)	41.5	15.2	43.3
	중인지	(102)	47.1	8.8	44.1
	고인지	(0)	0.0	0.0	0.0

[그림 IV-3] 제도 인지 시 제도 이용 검토 의향

(n=425, 단위: %)



5) 제도 효용성

- 본 제도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57.2%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특히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61.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응답자에 비해 제도를 조금이라도 알거나 잘 아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제도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전체 응답자 중 23.8%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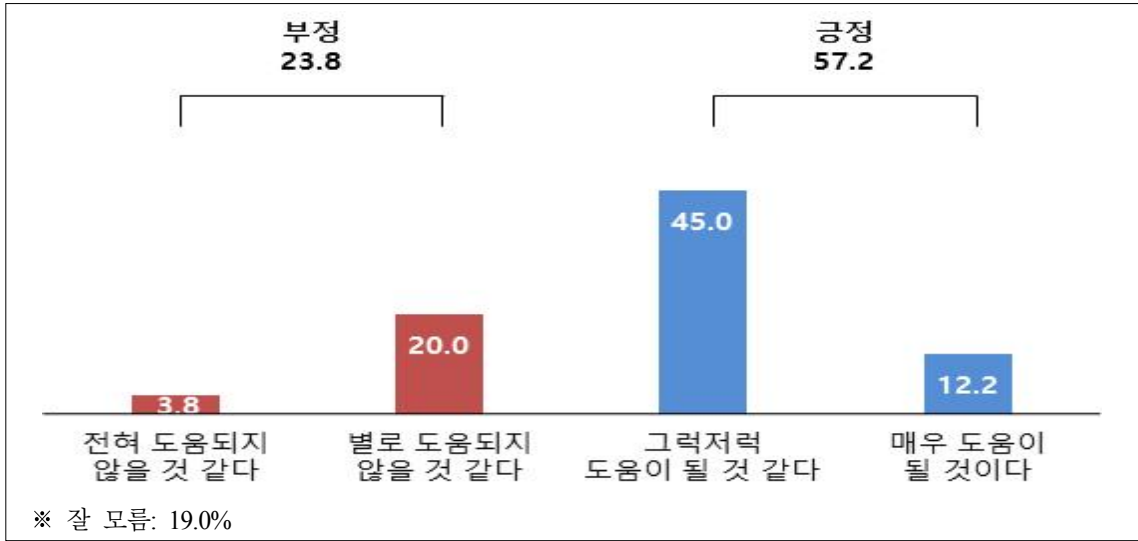
<표 IV-22> 제도 효용성(전체)

(n=500, 단위: %)

		사례 수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럭저럭 도움이 될 것 같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모름
전체		(500)	3.8	20.0	45.0	12.2	19.0
기업 유형	벤처기업	(470)	3.6	20.2	44.7	12.6	18.9
	3년 이내 중소기업	(30)	6.7	16.7	50.0	6.7	20.0
업력	3년 이내	(227)	3.1	21.6	47.1	14.5	13.7
	3년 초과~5년 이내	(137)	7.3	16.8	41.6	10.9	23.4
	5년 초과	(136)	1.5	20.6	44.9	9.6	23.5
산업 재산권	보유	(450)	4.0	18.7	44.7	12.4	20.2
	미보유	(50)	2.0	32.0	48.0	10.0	8.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42)	2.9	21.5	45.0	14.0	16.5
	10인 이상~30인 미만	(189)	3.2	16.9	47.1	10.1	22.8
	30인 이상~50인 미만	(36)	11.1	25.0	38.9	13.9	11.1
	50인 이상~100인 미만	(23)	4.3	17.4	52.2	0.0	26.1
	100인 이상	(10)	10.0	30.0	10.0	30.0	20.0
성별	남성	(167)	8.4	21.6	40.7	13.2	16.2
	여성	(333)	1.5	19.2	47.1	11.7	20.4
직위	대표이사	(64)	7.8	25.0	34.4	17.2	15.6
	임원/부서장	(52)	3.8	25.0	34.6	15.4	21.2
	중간관리자	(173)	5.8	19.1	46.8	11.6	16.8
	대리주임사원	(211)	0.9	18.0	49.3	10.4	21.3
업종	제조업	(341)	4.7	19.4	44.9	13.8	17.3
	서비스업	(112)	1.8	23.2	43.8	7.1	24.1
	도소매업	(28)	3.6	17.9	46.4	10.7	21.4
	기타업종	(19)	0.0	15.8	52.6	15.8	15.8
매출액	10억 미만	(152)	3.3	22.4	45.4	11.2	17.8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1.6	25.0	33.6	20.3	19.5
	30억 이상~50억 미만	(44)	6.8	11.4	63.6	0.0	18.2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5.8	19.2	48.1	9.6	17.3
	100억 이상	(45)	11.1	17.8	46.7	11.1	13.3
	모름/무응답	(79)	1.3	13.9	49.4	10.1	25.3
제도 인지도	비인지	(356)	3.7	22.5	41.9	11.2	20.8
	중인지	(118)	2.5	14.4	56.8	11.0	15.3
	고인지	(26)	11.5	11.5	34.6	30.8	11.5

[그림 IV-4] 제도 효용성(전체)

(n=500, 단위: %)



<표 IV-23> 제도 효용성(고인지)

(n=2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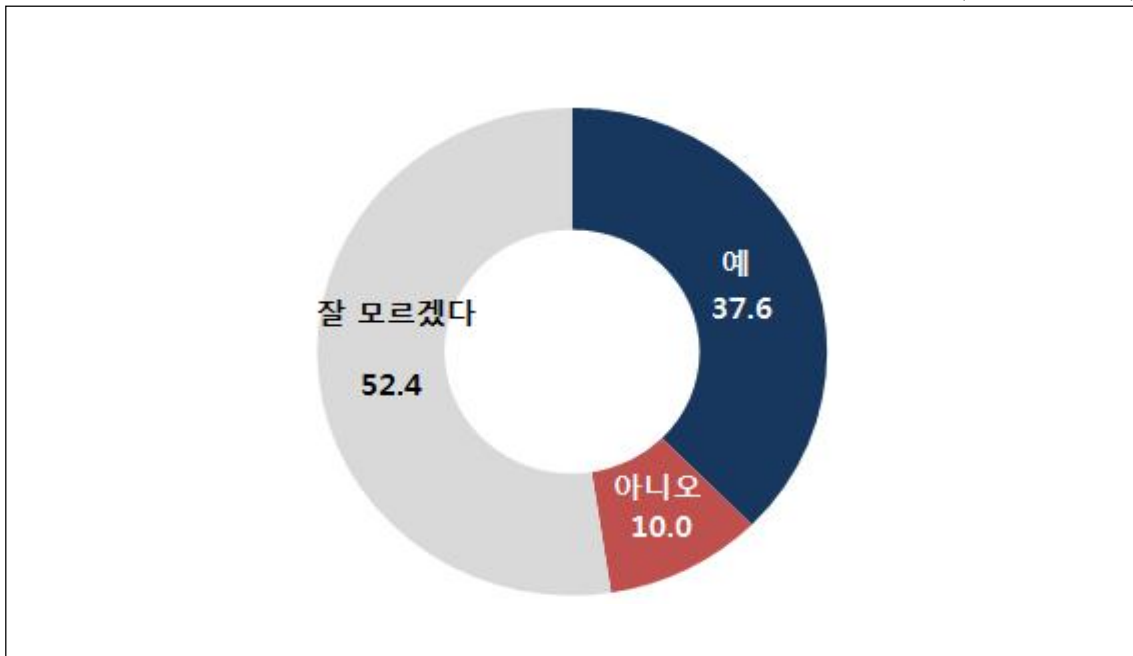
		사례 수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럭저럭 도움이 될 것 같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모름
전체		(26)	11.5	11.5	34.6	30.8	11.5
업력	3년 이내	(14)	7.1	7.1	42.9	35.7	7.1
	3년 초과~5년 이내	(8)	25.0	12.5	37.5	0.0	25.0
	5년 초과	(4)	0.0	25.0	0.0	75.0	0.0
산업 재산권	보유	(25)	12.0	12.0	32.0	32.0	12.0
	미보유	(1)	0.0	0.0	100.0	0.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12)	8.3	0.0	50.0	33.3	8.3
	10인 이상~30인 미만	(8)	12.5	25.0	37.5	25.0	0.0
	30인 이상~50인 미만	(3)	0.0	33.3	0.0	66.7	0.0
	50인 이상~100인 미만	(3)	33.3	0.0	0.0	0.0	66.7
성별	남성	(13)	15.4	15.4	38.5	7.7	23.1
	여성	(13)	7.7	7.7	30.8	53.8	0.0
직위	대표이사	(2)	50.0	0.0	50.0	0.0	0.0
	임원/부서장	(6)	16.7	16.7	33.3	16.7	16.7
	중간관리자	(11)	9.1	9.1	36.4	45.5	0.0
	대리/주임/사원	(7)	0.0	14.3	28.6	28.6	28.6
업종	제조업	(21)	14.3	9.5	33.3	33.3	9.5
	서비스업	(4)	0.0	25.0	50.0	0.0	25.0
	기타업종	(1)	0.0	0.0	0.0	100.0	0.0
매출액	10억 미만	(9)	22.2	11.1	44.4	22.2	0.0
	10억 이상~30억 미만	(3)	0.0	0.0	0.0	66.7	33.3
	50억 이상~100억 미만	(5)	0.0	40.0	20.0	20.0	20.0
	100억 이상	(3)	33.3	0.0	33.3	33.3	0.0
	모름/무응답	(6)	0.0	0.0	50.0	33.3	16.7

6)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Base: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n=450)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 폐지가 제도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 37.6%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특히 업력이 3년 초과~5년 이내, 종사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들어는 본 경우에 비해 잘 아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전체 응답자의 10.0%는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52.4%는 잘 모르겠다고 함

[그림 IV-5]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전체)

(n=450, 단위: %)



<표 IV-24>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전체)

(n=450, 단위: %)

		사례 수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450)	37.6	10.0	52.4
기업 유형	벤처기업	(423)	37.8	9.7	52.5
	3년 이내 중소기업	(27)	33.3	14.8	51.9
업력	3년 이내	(179)	37.4	10.6	52.0
	3년 초과~5년 이내	(137)	40.1	11.7	48.2
	5년 초과	(134)	35.1	7.5	57.5
산업 재산권	보유	(450)	37.6	10.0	52.4
	미보유	(0)	0.0	0.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16)	43.1	10.2	46.8
	10인 이상~30인 미만	(169)	32.0	7.7	60.4
	30인 이상~50인 미만	(34)	44.1	17.6	38.2
	50인 이상~100인 미만	(21)	23.8	14.3	61.9
	100인 이상	(10)	20.0	10.0	70.0
성별	남성	(153)	46.4	10.5	43.1
	여성	(297)	33.0	9.8	57.2
직위	대표이사	(55)	61.8	9.1	29.1
	임원/부서장	(47)	34.0	10.6	55.3
	중간관리자	(156)	41.0	10.3	48.7
	대리주임사원	(192)	28.6	9.9	61.5
업종	제조업	(307)	40.4	10.4	49.2
	서비스업	(103)	31.1	9.7	59.2
	도소매업	(24)	29.2	4.2	66.7
	기타업종	(16)	37.5	12.5	50.0
매출액	10억 미만	(139)	41.0	11.5	47.5
	10억 이상~30억 미만	(113)	40.7	8.8	50.4
	30억 이상~50억 미만	(38)	31.6	21.1	47.4
	50억 이상~100억 미만	(45)	46.7	11.1	42.2
	100억 이상	(42)	31.0	11.9	57.1
	모름/무응답	(73)	27.4	1.4	71.2
제도 인지도	비인지	(323)	36.2	8.4	55.4
	중인지	(102)	37.3	15.7	47.1
	고인지	(25)	56.0	8.0	36.0

<표 IV-25> 제외 대상 폐지에 따른 제도 활성화(고인지)

(n=26, 단위: %)

		사례 수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25)	56.0	8.0	36.0
업력	3년 이내	(13)	61.5	7.7	30.8
	3년 초과~5년 이내	(8)	37.5	12.5	50.0
	5년 초과	(4)	75.0	0.0	25.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5)	56.0	8.0	36.0
	10인 이상~30인 미만	(0)	0.0	0.0	0.0
	30인 이상~50인 미만	(12)	75.0	0.0	25.0
	50인 이상~100인 미만	(7)	42.9	14.3	42.9
성별	남성	(3)	66.7	0.0	33.3
	여성	(3)	0.0	33.3	66.7
직위	대표이사	(13)	46.2	7.7	46.2
	임원/부서장	(12)	66.7	8.3	25.0
	중간관리자	(2)	0.0	0.0	100.0
	대리/주임/사원	(6)	83.3	0.0	16.7
업종	제조업	(10)	50.0	20.0	30.0
	서비스업	(7)	57.1	0.0	42.9
	기타업종	(20)	65.0	5.0	30.0
매출액	10억 미만	(4)	25.0	25.0	50.0
	10억 이상~30억 미만	(1)	0.0	0.0	100.0
	50억 이상~100억 미만	(8)	50.0	12.5	37.5
	100억 이상	(3)	66.7	0.0	33.3
	모름/무응답	(5)	60.0	0.0	40.0

7) 제외 대상 폐지로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Base: 제외 대상 폐지가 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 n=169)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 폐지가 제도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대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음
- 뒤이어 ‘규제가 풀리면 대상범위가 확대되므로’(16.6%),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므로’(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6>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전체)

(n=169, 단위: %)

내용	응답비율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대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42.6
규제가 풀리면 대상범위가 확대되므로	16.6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므로	3.6
기업에 도움이 되서	1.8
기타	26.6

주: 모름/무응답(8.9%)은 표에서 제외

<표 IV-27>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고인지)

(n=14, 단위: %)

내용	응답비율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대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21.4
규제가 풀리면 대상범위가 확대되므로	21.4
기업에 도움이 되서	7.1
기타	28.6

주: 모름/무응답(21.4%)은 표에서 제외

8)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세금 혜택 조정 범위 확대’(41.8%),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34.0%), ‘지원 대상 범위 확대’(3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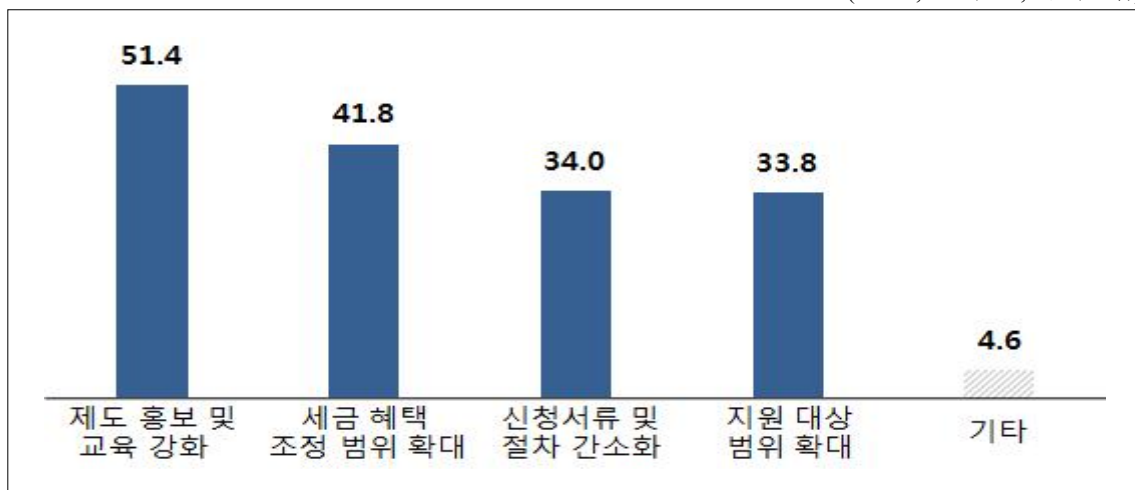
<표 IV-28>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전체)

(n=500,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제도홍보 및 교육 강화	세금 혜택 조정범위 확대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타
전체		(500)	51.4	41.8	34.0	33.8	4.6
기업 유형	벤처기업	(470)	51.3	40.6	33.0	33.2	4.9
	3년 이내 중소기업	(30)	53.3	60.0	50.0	43.3	0.0
업력	3년 이내	(227)	49.3	45.4	38.3	36.6	3.5
	3년 초과~5년 이내	(137)	55.5	35.8	30.7	32.1	6.6
	5년 초과	(136)	50.7	41.9	30.1	30.9	4.4
산업 재산권	보유	(450)	52.4	41.6	33.6	33.1	4.7
	미보유	(50)	42.0	44.0	38.0	40.0	4.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42)	55.8	39.7	34.7	35.1	4.1
	10인 이상~30인 미만	(189)	48.7	45.0	32.8	34.9	4.8
	30인 이상~50인 미만	(36)	55.6	36.1	30.6	27.8	5.6
	50인 이상~100인 미만	(23)	26.1	56.5	34.8	13.0	4.3
	100인 이상	(10)	40.0	20.0	50.0	50.0	10.0
성별	남성	(167)	55.1	40.1	28.7	32.9	7.8
	여성	(333)	49.5	42.6	36.6	34.2	3.0
직위	대표이사	(64)	56.3	39.1	25.0	48.4	15.6
	임원/부서장	(52)	48.1	50.0	34.6	28.8	3.8
	중간관리자	(173)	54.3	39.9	35.3	34.1	3.5
	대리주임사원	(211)	48.3	42.2	35.5	30.3	2.4
업종	제조업	(341)	50.1	41.6	34.6	34.6	5.9
	서비스업	(112)	55.4	41.1	31.3	33.0	1.8
	도소매업	(28)	46.4	50.0	25.0	32.1	3.6
	기타업종	(19)	57.9	36.8	52.6	26.3	0.0
매출액	10억 미만	(152)	58.6	38.2	34.9	34.2	5.3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56.3	43.0	34.4	39.1	3.9
	30억 이상~50억 미만	(44)	50.0	45.5	29.5	34.1	2.3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44.2	46.2	36.5	34.6	0.0
	100억 이상	(45)	35.6	42.2	42.2	26.7	4.4
	모름/무응답	(79)	44.3	41.8	27.8	27.8	8.9
제도 인지도	비인지	(356)	55.3	38.8	30.9	30.3	5.6
	중인지	(118)	49.2	50.8	43.2	41.5	0.8
	고인지	(26)	7.7	42.3	34.6	46.2	7.7

[그림 IV-6]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전체)

(n=500, 단위: %, 중복응답)



<표 IV-29>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고인지)

(n=26,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세금 혜택 조정 범위 확대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제도홍보 및 교육 강화	기타
전체		(26)	46.2	42.3	34.6	7.7	7.7
업력	3년 이내	(14)	50.0	35.7	42.9	7.1	7.1
	3년 초과~5년 이내	(8)	25.0	62.5	25.0	0.0	12.5
	5년 초과	(4)	75.0	25.0	25.0	25.0	0.0
산업 재산권	보유	(25)	44.0	44.0	32.0	8.0	8.0
	미보유	(1)	100.0	0.0	100.0	0.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12)	58.3	25.0	33.3	0.0	8.3
	10인 이상~30인 미만	(8)	37.5	50.0	37.5	12.5	12.5
	30인 이상~50인 미만	(3)	66.7	33.3	33.3	33.3	0.0
	50인 이상~100인 미만	(3)	0.0	100.0	33.3	0.0	0.0
성별	남성	(13)	23.1	53.8	23.1	0.0	15.4
	여성	(13)	69.2	30.8	46.2	15.4	0.0
직위	대표이사	(2)	0.0	0.0	0.0	0.0	100.0
	임원/부서장	(6)	50.0	50.0	33.3	0.0	0.0
	중간관리자	(11)	54.5	36.4	45.5	18.2	0.0
	대리/주임/사원	(7)	42.9	57.1	28.6	0.0	0.0
업종	제조업	(21)	47.6	42.9	28.6	4.8	9.5
	서비스업	(4)	25.0	25.0	50.0	0.0	0.0
	기타업종	(1)	100.0	100.0	100.0	100.0	0.0
매출액	10억 미만	(9)	33.3	22.2	55.6	0.0	22.2
	10억 이상~30억 미만	(3)	66.7	66.7	0.0	33.3	0.0
	50억 이상~100억 미만	(5)	60.0	60.0	40.0	20.0	0.0
	100억 이상	(3)	33.3	66.7	33.3	0.0	0.0
	모름/무응답	(6)	50.0	33.3	16.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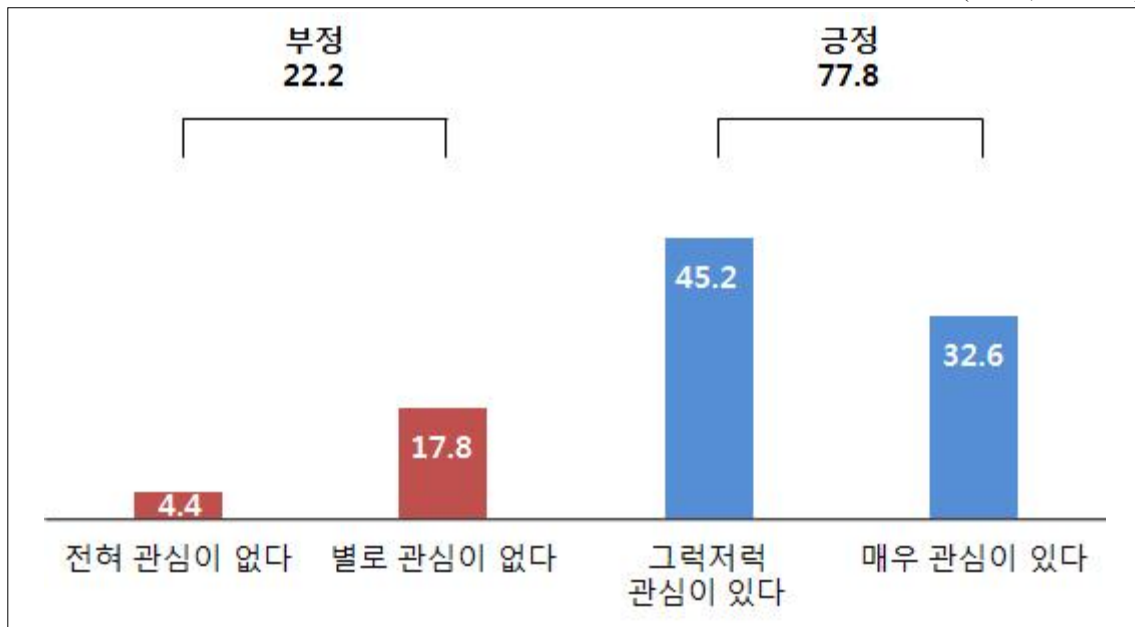
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조세 제도 접근성

1)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관심 정도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특히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대표이사, 임원 및 부서장의 지원 제도 관심이 중간관리자 이하 직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전체 응답자의 22.2%는 지원 제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7]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관심 정도(전체)

(n=500, 단위: %)



<표 IV-30>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관심 정도(전체)

(n=500, 단위: %)

		사례 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럭저럭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전체		(500)	4.4	17.8	45.2	32.6
기업 유형	벤처기업	(470)	4.3	17.9	44.9	33.0
	3년 이내 중소기업	(30)	6.7	16.7	50.0	26.7
업력	3년 이내	(227)	3.1	15.4	43.2	38.3
	3년 초과~5년 이내	(137)	4.4	16.1	46.0	33.6
	5년 초과	(136)	6.6	23.5	47.8	22.1
산업 재산권	보유	(450)	4.7	16.7	45.3	33.3
	미보유	(50)	2.0	28.0	44.0	26.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42)	2.5	17.4	42.1	38.0
	10인 이상~30인 미만	(189)	4.8	16.4	48.7	30.2
	30인 이상~50인 미만	(36)	0.0	25.0	55.6	19.4
	50인 이상~100인 미만	(23)	17.4	21.7	34.8	26.1
	100인 이상	(10)	30.0	20.0	40.0	10.0
성별	남성	(167)	4.2	16.8	38.3	40.7
	여성	(333)	4.5	18.3	48.6	28.5
직위	대표이사	(64)	3.1	18.8	26.6	51.6
	임원/부서장	(52)	0.0	9.6	40.4	50.0
	중간관리자	(173)	4.6	16.2	45.7	33.5
	대리주임사원	(211)	5.7	20.9	51.7	21.8
업종	제조업	(341)	5.3	19.4	42.2	33.1
	서비스업	(112)	2.7	15.2	51.8	30.4
	도소매업	(28)	3.6	14.3	46.4	35.7
	기타업종	(19)	0.0	10.5	57.9	31.6
매출액	10억 미만	(152)	2.6	17.1	40.1	40.1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2.3	14.1	48.4	35.2
	30억 이상~50억 미만	(44)	2.3	13.6	61.4	22.7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1.9	15.4	57.7	25.0
	100억 이상	(45)	13.3	20.0	37.8	28.9
	모름/무응답	(79)	8.9	27.8	36.7	26.6
제도 인지도	비인지	(356)	4.5	18.8	46.1	30.6
	중인지	(118)	2.5	15.3	44.9	37.3
	고인지	(26)	11.5	15.4	34.6	38.5

<표 IV-31>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관심 정도(고인지)

(n=26, 단위: %)

		사례 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럭저럭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전체		(26)	11.5	15.4	34.6	38.5
업력	3년 이내	(14)	7.1	21.4	35.7	35.7
	3년 초과~5년 이내	(8)	25.0	12.5	25.0	37.5
	5년 초과	(4)	0.0	0.0	50.0	50.0
산업 재산권	보유	(25)	12.0	16.0	36.0	36.0
	미보유	(1)	0.0	0.0	0.0	10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12)	0.0	16.7	33.3	50.0
	10인 이상~30인 미만	(8)	12.5	12.5	37.5	37.5
	30인 이상~50인 미만	(3)	0.0	0.0	66.7	33.3
	50인 이상~100인 미만	(3)	66.7	33.3	0.0	0.0
성별	남성	(13)	15.4	30.8	23.1	30.8
	여성	(13)	7.7	0.0	46.2	46.2
직위	대표이사	(2)	50.0	50.0	0.0	0.0
	임원/부서장	(6)	0.0	16.7	33.3	50.0
	중간관리자	(11)	9.1	9.1	27.3	54.5
	대리/주임/사원	(7)	14.3	14.3	57.1	14.3
업종	제조업	(21)	14.3	9.5	28.6	47.6
	서비스업	(4)	0.0	50.0	50.0	0.0
	기타업종	(1)	0.0	0.0	100.0	0.0
매출액	10억 미만	(9)	11.1	33.3	22.2	33.3
	10억 이상~30억 미만	(3)	0.0	0.0	0.0	100.0
	50억 이상~100억 미만	(5)	0.0	20.0	40.0	40.0
	100억 이상	(3)	33.3	0.0	66.7	0.0
	모름/무응답	(6)	16.7	0.0	50.0	33.3

2)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

- 평소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조세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는지 파악한 결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47.2%)
 - 특히 업력이 5년 초과인 벤처기업, 대리/주임/사원급 직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뒤이어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39.2%),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21.2%), ‘정부부처’(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2>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전체)

(n=500,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세무 대리인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신용 보증 기금, 기술 신용 보증 기금	정부 부처	협회 등 경제 단체	동종 업체	세무서	회사 내 세무 전문 인력	기타
전체		(500)	47.2	39.2	21.2	15.4	14.8	13.2	10.4	5.8	1.8
기업 유형	벤처기업	(470)	46.8	39.6	21.7	16.0	14.9	13.0	9.8	5.5	1.5
	3년 이내 중소기업	(30)	53.3	33.3	13.3	6.7	13.3	16.7	20.0	10.0	6.7
업력	3년 이내	(227)	46.3	40.5	22.0	13.7	15.0	16.3	13.2	5.3	2.2
	3년 초과~5년 이내	(137)	43.1	35.8	16.1	20.4	16.1	10.2	8.8	5.1	2.9
	5년 초과	(136)	52.9	40.4	25.0	13.2	13.2	11.0	7.4	7.4	0.0
산업 재산권	보유	(450)	47.1	38.9	20.7	16.4	15.8	12.7	9.6	5.8	2.0
	미보유	(50)	48.0	42.0	26.0	6.0	6.0	18.0	18.0	6.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42)	42.6	40.5	21.5	16.5	14.9	14.9	9.9	5.4	2.9
	10인 이상~30인 미만	(189)	52.4	38.1	18.5	14.8	16.9	13.8	10.1	4.8	0.0
	30인 이상~50인 미만	(36)	47.2	30.6	36.1	11.1	8.3	8.3	16.7	5.6	2.8
	50인 이상~100인 미만	(23)	52.2	43.5	8.7	17.4	8.7	4.3	13.0	21.7	4.3
	100인 이상	(10)	50.0	50.0	40.0	10.0	10.0	0.0	0.0	0.0	0.0
성별	남성	(167)	44.3	43.7	19.2	16.2	15.6	16.2	6.6	4.8	2.4
	여성	(333)	48.6	36.9	22.2	15.0	14.4	11.7	12.3	6.3	1.5
직위	대표이사	(64)	39.1	37.5	21.9	18.8	12.5	21.9	0.0	1.6	1.6
	임원/부서장	(52)	46.2	44.2	19.2	11.5	13.5	11.5	11.5	3.8	3.8
	중간관리자	(173)	46.8	38.7	27.7	17.3	19.7	13.3	9.8	4.0	1.2
	대리/주임/사원	(211)	50.2	38.9	16.1	13.7	11.8	10.9	13.7	9.0	1.9
업종	제조업	(341)	44.0	39.0	20.8	17.3	13.5	13.5	12.9	5.6	2.3
	서비스업	(112)	51.8	38.4	23.2	14.3	15.2	15.2	2.7	7.1	0.9
	도소매업	(28)	64.3	39.3	21.4	7.1	14.3	7.1	7.1	3.6	0.0
	기타업종	(19)	52.6	47.4	15.8	0.0	36.8	5.3	15.8	5.3	0.0
매출액	10억 미만	(152)	42.1	41.4	15.1	21.7	15.8	11.2	7.9	6.6	2.0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47.7	39.1	28.9	11.7	12.5	21.9	9.4	7.0	0.8
	30억 이상~50억 미만	(44)	52.3	40.9	25.0	11.4	11.4	11.4	13.6	2.3	2.3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46.2	34.6	23.1	19.2	21.2	7.7	17.3	1.9	0.0
	100억 이상	(45)	44.4	51.1	24.4	13.3	17.8	8.9	8.9	6.7	0.0
	모름/무응답	(79)	55.7	30.4	15.2	10.1	12.7	10.1	11.4	6.3	5.1
제도 인지도	비인지	(356)	44.9	39.0	17.7	15.4	16.0	12.1	8.7	5.1	2.0
	중인지	(118)	54.2	39.8	28.8	15.3	11.9	16.9	14.4	9.3	0.8
	고인지	(26)	46.2	38.5	34.6	15.4	11.5	11.5	15.4	0.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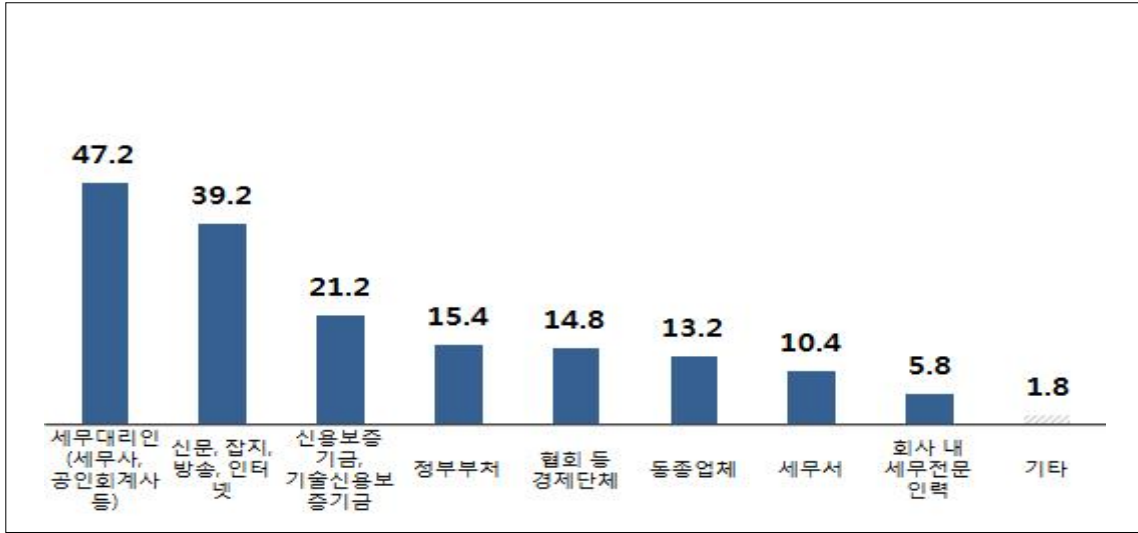
<표 IV-33>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고인지)

(n=26,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세무 대리인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신용 보증 기금, 기술 신용 보증 기금	세무서	정부 부처	동종 업체	협회 등 경제 단체	기타
전체		(26)	46.2	38.5	34.6	15.4	15.4	11.5	11.5	3.8
업력	3년 이내	(14)	50.0	35.7	28.6	7.1	21.4	7.1	21.4	7.1
	3년 초과~5년 이내	(8)	50.0	37.5	37.5	12.5	0.0	12.5	0.0	0.0
	5년 초과	(4)	25.0	50.0	50.0	50.0	25.0	25.0	0.0	0.0
산업 재산권	보유	(25)	48.0	36.0	36.0	16.0	16.0	12.0	12.0	4.0
	미보유	(1)	0.0	100.0	0.0	0.0	0.0	0.0	0.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12)	50.0	33.3	33.3	16.7	33.3	8.3	8.3	8.3
	10인 이상~30인 미만	(8)	37.5	12.5	25.0	12.5	0.0	25.0	25.0	0.0
	30인 이상~50인 미만	(3)	33.3	66.7	66.7	33.3	0.0	0.0	0.0	0.0
	50인 이상~100인 미만	(3)	66.7	100.0	33.3	0.0	0.0	0.0	0.0	0.0
성별	남성	(13)	61.5	30.8	23.1	7.7	15.4	7.7	15.4	0.0
	여성	(13)	30.8	46.2	46.2	23.1	15.4	15.4	7.7	7.7
직위	대표이사	(2)	50.0	0.0	100.0	0.0	0.0	0.0	0.0	0.0
	임원/부서장	(6)	33.3	50.0	16.7	16.7	16.7	16.7	0.0	16.7
	중간관리자	(11)	36.4	36.4	36.4	18.2	18.2	18.2	27.3	0.0
	대리/주임/사원	(7)	71.4	42.9	28.6	14.3	14.3	0.0	0.0	0.0
업종	제조업	(21)	42.9	33.3	42.9	19.0	19.0	9.5	4.8	4.8
	서비스업	(4)	50.0	75.0	0.0	0.0	0.0	0.0	25.0	0.0
	기타업종	(1)	100.0	0.0	0.0	0.0	0.0	100.0	100.0	0.0
매출액	10억 미만	(9)	44.4	33.3	44.4	0.0	22.2	0.0	22.2	11.1
	10억 이상~30억 미만	(3)	33.3	33.3	33.3	33.3	33.3	33.3	0.0	0.0
	30억 이상~100억 미만	(5)	40.0	20.0	20.0	40.0	0.0	40.0	20.0	0.0
	100억 이상	(3)	66.7	66.7	66.7	0.0	0.0	0.0	0.0	0.0
	모름/무응답	(6)	50.0	50.0	16.7	16.7	16.7	0.0	0.0	0.0

[그림 IV-8]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혜택 정보 인지 경로(전체)

(n=500,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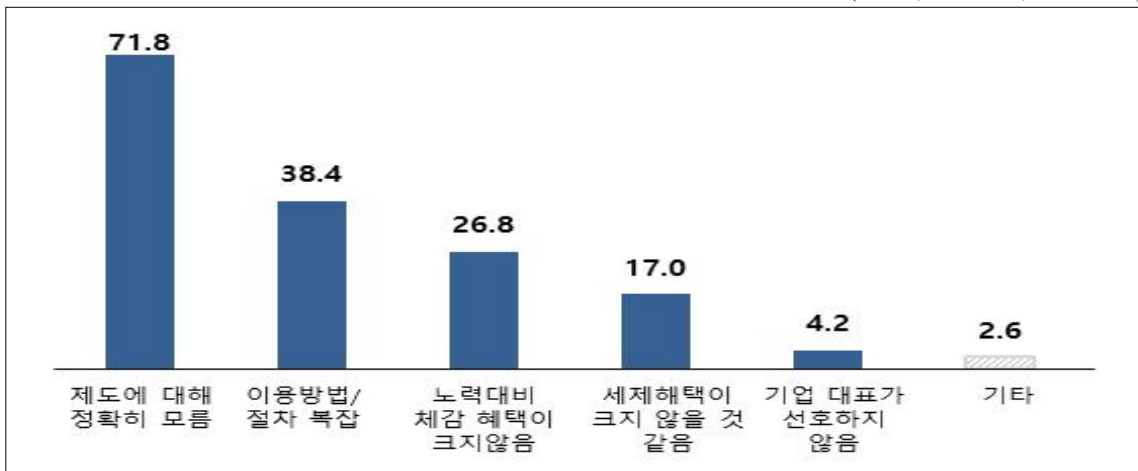


3)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38.4%),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26.8%),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전체)

(n=500, 단위: %, 중복응답)



<표 IV-34>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전체)

(n=500,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제도를 정확히 모름	이용방법 / 절차 복잡	노력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음	세계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음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기타
전체		(500)	71.8	38.4	26.8	17.0	4.2	2.6
기업 유형	벤처기업	(470)	71.3	38.3	26.8	16.8	4.3	2.6
	3년 이내 중소기업	(30)	80.0	40.0	26.7	20.0	3.3	3.3
업력	3년 이내	(227)	74.4	38.8	23.3	17.2	4.8	2.6
	3년 초과~5년 이내	(137)	64.2	39.4	30.7	19.0	4.4	2.9
	5년 초과	(136)	75.0	36.8	28.7	14.7	2.9	2.2
산업 재산권	보유	(450)	71.3	39.1	27.3	16.7	4.2	2.9
	미보유	(50)	76.0	32.0	22.0	20.0	4.0	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42)	73.6	35.5	26.9	16.9	5.4	3.3
	10인 이상~30인 미만	(189)	70.4	38.6	27.5	17.5	3.2	2.6
	30인 이상~50인 미만	(36)	75.0	33.3	27.8	19.4	2.8	0.0
	50인 이상~100인 미만	(23)	69.6	56.5	26.1	13.0	0.0	0.0
	100인 이상	(10)	50.0	80.0	10.0	10.0	10.0	0.0
성별	남성	(167)	73.1	36.5	25.1	21.0	7.8	3.6
	여성	(333)	71.2	39.3	27.6	15.0	2.4	2.1
직위	대표이사	(64)	73.4	34.4	34.4	17.2	9.4	4.7
	임원/부서장	(52)	71.2	36.5	23.1	15.4	3.8	1.9
	중간관리자	(173)	72.3	42.8	28.3	19.1	4.6	2.9
	대리주임사원	(211)	71.1	36.5	24.2	15.6	2.4	1.9
업종	제조업	(341)	73.0	36.4	28.2	18.5	4.7	2.9
	서비스업	(112)	71.4	39.3	22.3	14.3	4.5	2.7
	도소매업	(28)	60.7	57.1	25.0	14.3	0.0	0.0
	기타업종	(19)	68.4	42.1	31.6	10.5	0.0	0.0
매출액	10억 미만	(152)	73.0	38.2	24.3	17.1	3.3	3.3
	10억 이상~30억 미만	(128)	75.0	36.7	30.5	19.5	7.0	3.1
	30억 이상~50억 미만	(44)	88.6	29.5	43.2	18.2	2.3	0.0
	50억 이상~100억 미만	(52)	65.4	46.2	23.1	23.1	1.9	0.0
	100억 이상	(45)	62.2	48.9	15.6	15.6	6.7	0.0
	모름/무응답	(79)	64.6	35.4	25.3	8.9	2.5	5.1
제도 인지도	비인지	(356)	75.8	35.1	24.7	15.4	3.4	2.5
	중인지	(118)	66.1	46.6	33.1	19.5	5.1	3.4
	고인지	(26)	42.3	46.2	26.9	26.9	11.5	0.0

<표 IV-35>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비활성화 이유(고인지)

(n=26, 단위: %, 중복응답)

		사례 수	이용방법 /절차 복잡	제도를 정확히 모름	세계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음	노력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음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전체		(26)	46.2	42.3	26.9	26.9	11.5
업력	3년 이내	(14)	42.9	42.9	14.3	7.1	14.3
	3년 초과~5년 이내	(8)	62.5	50.0	37.5	37.5	12.5
	5년 초과	(4)	25.0	25.0	50.0	75.0	0.0
산업 재산권	보유	(25)	48.0	44.0	28.0	28.0	8.0
	미보유	(1)	0.0	0.0	0.0	0.0	100.0
종사자 수	10인 미만	(12)	41.7	50.0	16.7	16.7	16.7
	10인 이상~30인 미만	(8)	62.5	25.0	50.0	12.5	12.5
	30인 이상~50인 미만	(3)	33.3	33.3	33.3	66.7	0.0
	50인 이상~100인 미만	(3)	33.3	66.7	0.0	66.7	0.0
성별	남성	(13)	46.2	53.8	23.1	15.4	15.4
	여성	(13)	46.2	30.8	30.8	38.5	7.7
직위	대표이사	(2)	50.0	100.0	50.0	50.0	0.0
	임원/부서장	(6)	50.0	50.0	16.7	0.0	33.3
	중간관리자	(11)	63.6	18.2	18.2	27.3	9.1
	대리/주임/사원	(7)	14.3	57.1	42.9	42.9	0.0
업종	제조업	(21)	42.9	42.9	33.3	28.6	14.3
	서비스업	(4)	50.0	50.0	0.0	25.0	0.0
	기타업종	(1)	100.0	0.0	0.0	0.0	0.0
매출액	10억 미만	(9)	33.3	55.6	22.2	22.2	22.2
	10억 이상~30억 미만	(3)	66.7	66.7	33.3	66.7	33.3
	50억 이상~100억 미만	(5)	60.0	20.0	20.0	40.0	0.0
	100억 이상	(3)	33.3	0.0	66.7	33.3	0.0
	모름/무응답	(6)	50.0	50.0	16.7	0.0	0.0

4.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가. 제도 인지 수준 및 배경

1) 벤처기업 지원 제도 인지 수준

-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세무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임
 -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거나 세무사에게 자세한 것을 문의해 보라는 등의 형식적인 응대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약조건 역시 제도 접근성에 걸림돌이 됨
 - 정부의 지원 제도 이용 시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중단됨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있으면 지원 제도 이용에 도움이 됨

.....
“찾아보기보다는 주로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일부를 알고 있는데 ... 제도가 실제로 혜택을 받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요.”(6)

“제도가 많다는 건 아는데 이걸 막상 찾아서 들어가면 실제로 이걸 감면 받고 해야 됐을 때 누군가 컨설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들지요. 돈을 무조건 어딘가에 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컨설팅을 받든가 해야지 ...”(3)

“매출을 내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정부 제도는 물어보면 홈페이지에 있어요. 또는 세무사 연결하세요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재무 팀에서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2)
.....

2)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인지도

-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 대다수였으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해 실제로 적용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그 부분(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은 처음 봐요. 다른 건 그나마 들었는데 이걸 처음 들어요.”(2)

“(전화 조사 이후에) 찾아보고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표님한테 여쭙 보니까 잘 아시더라고요. 잘 아시고 제도의 문제점이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5)

3) 제도 비인지 이유

- 규모가 작고 시작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대부분 연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재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부재인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낮음
- 또한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나 지원 제도는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됨(초기 단계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인력, 시간, 비용에 집중함)
- 어느 정도 안정기를 갖게 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대표나 재무 담당자가 세무사를 통해 세제혜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세무사들도 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금을 따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버는 데에 더 고민하지. 세제혜택보다는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몇몇회사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해봤어요. 회사의 형태가 갖춰진 것 같지 않은데 내실있는 회사가 있어요. 반대로 외형은 있는데 내실이 없기도 하고... 대부분 내부관리가 안되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하잖아요.”(7)

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효과성

1) 제도에 대한 평가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받은 주식의 현금화되어 있지 않은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감이 있음

-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동일한 가치의 주식을 받는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함
- 기타소득세보다 나중에 가치가 더 커진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더 크다면 이 제도의 혜택가치가 크겠으나, 사전적으로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예상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으며 신청절차도 복잡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성을 더 떨어뜨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재산권은 현물출자로 투자를 했는데 세금을 내야 되나? 주식을 받았을 때는 내야 되겠지만 대부분 벤처 기업은 3년 전이잖아요. 대부분은 주식을 받는 것 보다는 보통은 지분화시켜 놓지요. 그 상황에서 벌써 아직 작은 회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세부터 준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할 때는 원래 평가를 안 받지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평가를 안 받고 투자를 하는 회사와 저희들이 이면 설정해요. 세금 안 내게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2)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저것까지 다 파악해서 특혜를 받느냐 혜택을 받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6)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등급이 50% 안에 든다는 건 T-T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3년 치 재무제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매출을 봐요. 기술성만 가지고 기술등급을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재무 평가가 되어 있을 때 신용도 평가가 되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기술이 좋다는 건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시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5)

“제도는 벤처기업이나 3년이 안된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이 필요한데 돈은 없으니까 이걸 출자를 받아서 주식으로 주고 나중에 이익이 되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끌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자기의 특허권을 저런 창업한 지 3년밖에 안된 회사에다 출자할만한 사람이 저 정도의 혜택으로 얼마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제도를 받아본다면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 특례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효과가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모르는 벤처 기업을 찾아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찾아서 투자를 할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3)



2)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한 의견

- 현물출자를 위한 가치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짐
 - 현물출자용 특허 평가와 해외 수출용 특허 평가는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함
-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보다는 특허권을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을 더 쉽게 활용하며,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도 단발성이거나 규모가 작아 기대하는 혜택이 낮아 제도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봄

“회사를 몇 번 다녔어도 현물출자를 받지 않고 특허권을 돈을 주고 사지요. 출자하면 나중에 회사가 크면 배당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사지요. 저걸 출자까지 받아서 그런 절차나 규정을 거쳐서 그걸 보유하고 차후에 계속 관리하면서 나가느니 아예 특허권을 사서 보유하고 그 기술을 쓰는 쪽으로 선택해 왔었거든요.”(3)

“저런 회사(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회사)는 대표가 상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주주가 식구들이 많잖아요. 식구들 친구들, 지인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전반적으로 넓혀가지 않고 거기에서 매출을 일으켜서 직원들 운용하면서 그 정도만 되면 그렇게 하지요. 저런 출자를 받아서 하는 건 대부분 그 기술성을 가지고 정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재산권을 기술 평가를 받아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가치 평가가 나오. 그걸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 받는다거나 엔젤 벤처 투자를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정부 투자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레벨로 업이 되고 ...”(5)

“제도를 잘 알더라도 (현물출자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벌어지지 않는 작업이니까”(2)

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한

-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설립자 본인이거나 주변의 친인척 관계자가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제한 요건이 있는 한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 다른 미비점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벤처기업의 생태구조를 생각해 제한 조건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함

□ 반면 대기업 또는 자본력이 큰 회사에서 벤처기업을 만들어 악용할 소지도 있음

“특허라면 그걸 개발한 본인만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제3자한테 사업을 시켜서 성공할지 못 할지는 몰라요. 보통은 자기가 성공시켜야 해요 그러면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6)

“특허권이라고 하면 친족이나 친구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3년 이내 중소기업이라면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상 있는 걸 판단하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특허권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 시작해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따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3)

“시장 규모가 작고, 그나마 해볼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보통은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폐지한다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이용자가 늘어나죠.”(2)

라. 제도 활성화 방안

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활성화 방안

□ 벤처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의 홍보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봄

○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은 재무담당자와 대표에게 있으나 세무사에게 일임하여 맡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를 통한 제도 홍보 방법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음

□ 산업재산권의 가치 환산 방법을 더 쉽게 함으로써 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 준다면 초기에 권리 소유자와 기업 간의 줄다리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일반등록 기준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면 벤처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안으로 해서 수출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그 분야에 맞게끔 전문 위원이 직접 다녀요. 배정이 돼요. 섹터들을 묶어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담당이 되는데 신청하는 회사만 되기는 하는데 신청을 하면 와서 자기네 수출 분야, 코트라 이용분야는 그 분야 그런데 아직 재무 쪽은 없어요.”(5)

“일단은 세금혜택이 크다고 하면 금방 알게 되겠죠. 대부분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원 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죠. 일단 중기청 같은 사이트나...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컨설팅 업체에서 와서 접근을 하죠. 무엇보다 지적재산권이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야 할 것 같아요. 특허를 하나 출자를 한다.. 할 때 이게 300만원이야 천만원이야 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적으로 이 특허가 1억짜리야 하면 서로가 담보가 되니 무형의 자산이 유형의 자산으로 깔끔하게 산정이 되는데.. 이 때 산정할 때 비용이 안 들거나 적게 들면 더 낮지 않을까요. 일반 등록이 500만원 정도 되니까 언더 100만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2)

“어느 기업이든 이걸 논할 수 있는 건 1명 내지 2명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원이예요. 벤처기업은 기술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요. 재무 담당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7)

2) 기타 조세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 직접적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채널 필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채널 필요
- 대중매체를 통해 벤처기업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격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기업 스스로가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자동으로 적격 여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시스템에다 이걸 만들기 위한 로직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업데이트만 하면 알아서 답변이 나와야 해요.”(2)

“(광고) 웹에서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네이버 배너 광고. 그런 국가에서 하는 다른 지원 제도들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들은 컴퓨터 앞에 많이 있으니까.”(3)

“한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하나의 요약표가 되어서 기업이 바로 지원 제도가 뭐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뭔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벤처면 벤처에 대한 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지금은 이 제도 하나하나를 찾아가잖아요 제도 이름 자체도 모르는데 찾아볼 수가 없지요.”(6)

“벤처기업 창업 단계에 뭐뭐 있다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기관이 너무 많잖아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써머리가 짝 되면 좋겠고...”(7)

5.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제도 이용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 비율이 71.2%로 나타났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라는 응답비율이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질문에서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제도 이용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등이 상이하므로, 제도 홍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도 이용 실적 저조와 관련된 설문 문항의 경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인 요소(factor) 간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
 - 중복응답의 경우 응답 순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로 응답한 것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함
 - 먼저 복수 응답 가운데 첫 번째 응답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인 대상자들을 조건부로(conditional), 두 번째 및 기타 다른 응답의 분포를 살펴봄
 - 첫 번째 응답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라고 응답한 309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45명이 복수응답을 하였으며, 그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표 IV-36>과 같음
 -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32%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복수 응답하였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임

<표 IV-36>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고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들의 복수응답 분포

(단위: 명, %)

선택된 응답	빈도 수	비중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9	16.1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0	17.9
기업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	1.8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7	12.5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2	3.6
대상자가 아니어서	18	32.1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클 것 같아서	0	0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1	1.8
현물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지 않아서	3	5.4
기타	5	8.9
관심이 없어서	0	0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받지 못해서	0	0
세무 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0	0
출원 절차 중이어서	0	0
필요성을 못 느껴서	0	0
해당사항이 없어서	0	0
모름/무응답	0	0

- 응답의 순서와 상관없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기타 복수 응답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IV-37> 참조)
- 응답 순서와 상관없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를 복수응답 가운데 한 번이라도 선택한 응답자는 338명임
 - <표 IV-36>의 응답 분포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대상자가 아니어서’ 혹은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라고 복수 응답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응답자의 회사가 대상 요건에 맞지 않거나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가 제도의 이용을 저조하게 만든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제도 홍보와 더불어서, 대상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용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IV-37>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복수응답 분포

(단위: 명, %)

선택된 응답	빈도 수	비중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17	15.3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22	19.8
기업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4	3.6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11	9.9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6	5.4
대상자가 아니어서	22	19.8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클 것 같아서	3	2.7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6	5.4
현물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지 않아서	7	6.3
기타	13	11.7
관심이 없어서	0	0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받지 못해서	0	0
세무 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0	0
출원 절차 중이어서	0	0
필요성을 못 느껴서	0	0
해당사항이 없어서	0	0
모름/무응답	0	0

- 응답의 순서와 상관없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를 이용 저조의 원인으로 응답하지 않은 162명의 응답 분포는 <표 IV-38>과 같음
 - 응답 순서와 상관없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를 복수 응답 가운데 한 번이라도 선택한 응답자는 338명임
 -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25.7%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13.6%는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여,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기타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표 IV-36>과 <표 IV-37>의 기타 응답과는 달리 다른 기타 응답에 대한 분포도 존재함
 - 결론적으로 제도 비인지를 주요 원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용 방법 및 절차의 복잡성이 이용 실적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경우 역시 대상 요건 완화 혹은 이용 방법 및 절차의 간소화를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IV-38> 제도 비인지를 원인으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복수응답 분포

(단위: 명, %)

선택된 응답	빈도 수	비중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15	10.7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9	13.6
기업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3	2.1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8	5.7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8	5.7
대상자가 아니어서	36	25.7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클 것 같아서	3	2.1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3	2.1
현물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지 않아서	11	7.9
기타	10	7.1
관심이 없어서	3	2.1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받지 못해서	2	1.4
세무 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5	3.6
출원 절차 중이어서	3	2.1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2.9
해당사항이 없어서	3	2.1
모름/무응답	4	2.9

- 이와 같이 복수응답의 분포를 통해 제도 이용 실적이 부진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론임
 -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제도 이용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선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제도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 제도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 방법 및 절차의 간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용 방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세무 대리인,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더불어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조항의 이용 실적 부족 원인과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제도 비활성화의 원인과 관계에 대하여 살펴봄
 - 이를 통해 동 조항의 이용 실적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 동 조항 비활성화의 원인이 전반적인 지원제도 비활성화의 원인과 유사한 원인이라면 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identify)하기는 어려움
 - <표 IV-39>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동 조항 이용 실적 저조에 대한 요인 분포를 나타내며 (전체 응답 기업에 대해), <표 IV-40>은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기타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제도 비활성화에 대한 요인 분포를 나타냄
 - 동 조항의 경우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고 그 뒤를 이어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전반적인 지원제도 관련하여서는 역시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IV-39〉 동 조항 이용 실적 저조에 대한 요인 응답 분포

(단위: 명, %)

선택된 응답	빈도 수	비중
(1)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338	57.3
(2)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30	5.1
(3)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38	6.4
(4) 기업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7	1.2
(5) 기업 대표가 선호하지 않음	19	3.2
(6)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17	2.9
(7) 대상자가 아니어서	66	11.2
(8)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클 것 같아서	7	1.2
(9)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9	1.5
(10) 현물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지 않아서	19	3.2
(11) 기타	16	2.7
(21) 관심이 없어서	3	0.5
(22)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받지 못해서	2	0.3
(23) 세무 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5	0.9
(24) 출원 절차 중이어서	3	0.5
(25)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0.7
(26) 해당사항이 없어서	3	0.5
(99) 모름/무응답	4	0.7

〈표 IV-40〉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제도
비활성화 요인 응답 분포

(단위: 명, %)

선택된 응답	빈도 수	비중
(1) 세제혜택(세금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85	10.6
(2) 제도에 대해 정확히(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359	44.7
(3)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92	23.9
(4) 기업 대표(대표일 경우엔 본인)가 선호하지 않음	21	2.6
(5)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134	16.7
(6) 기타	13	1.6

<표 IV-41>은 동 조항의 이용 부족 원인에 대한 첫 번째 응답과 일반지원제도 이
용 부족 원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의 상관관계를 나타냄⁶⁵⁾

○ 동 조항 ‘(1)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를 응답한 응답자들의 66%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2)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65)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응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가정하였음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12.9%는 '(1) 세제혜택(세금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함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2)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총 273건의 응답 가운데 약 75%가 (204건) 동 조항과 관련하여 '(1)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10%는 '(7) 대상자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함
- 관계 분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 있으며,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자 요건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IV-41> 동 조항 및 전반적 지원제도 이용 부족 요인 간의 관계 분포

(단위: 명, %)

전반적 지원 제도 / 동 조항	(1)	(2)	(3)	(4)	(5)	(6)	합계
(1)	40 (12.9) <58.8>	204 (66.0) <74.7>	35 (11.3) <60.3>	4 (1.3) <44.4>	22 (7.1) <62.9>	4 (1.3) <57.1>	309 (100.0) <68.7>
(2)	5 (38.5) <7.4>	4 (30.8) <1.5>	2 (15.4) <3.4>	1 (7.7) <11.1>	1 (7.7) <2.9>	0 (0.0) <0.0>	13 (100.0) <2.9>
(3)	5 (31.3) <7.4>	6 (37.5) <2.2>	4 (25.0) <6.9>	0 (0.0) <0.0>	1 (6.3) <2.9>	0 (0.0) <0.0>	16 (100.0) <3.6>
(4)	0 (0.0) <0.0>	1 (33.3) <0.4>	1 (33.3) <1.7>	0 (0.0) <0.0>	0 (0.0) <0.0>	1 (33.3) <14.3>	3 (100.0) <0.7>
(5)	3 (37.5) <4.4>	2 (25.0) <0.7>	0 (0.0) <0.0>	1 (12.5) <11.1>	2 (25.0) <5.7>	0 (0.0) <0.0>	8 (100.0) <1.8>
(6)	4 (36.4) <5.9>	3 (27.3) <1.1>	3 (27.3) <5.2>	0 (0.0) <0.0>	1 (9.1) <2.9>	0 (0.0) <0.0>	11 (100.0) <2.4>
(7)	3 (6.8) <4.4>	26 (59.1) <9.5>	7 (15.9) <12.1>	2 (4.6) <22.2>	4 (9.1) <11.4>	2 (4.6) <28.6>	44 (100.0) <9.8>

동 조항	전반적 지원제도						합계
	(1)	(2)	(3)	(4)	(5)	(6)	
(8)	1 (25.0) <1.5>	3 (75) <1.1>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4 (100.0) <0.9>
(9)	0 (0.0) <0.0>	3 (100.0) <1.1>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3 (100.0) <0.7>
(10)	4 (33.3) <5.9>	4 (33.3) <1.5>	3 (25.0) <5.2>	0 (0.0) <0.0>	1 (8.3) <2.9>	0 (0.0) <0.0>	12 (100.0) <2.7>
(11)	2 (66.7) <2.9>	1 (33.3) <0.4>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3 (100.0) <0.7>
(21)	0 (0.0) <0.0>	2 (66.7) <0.7>	0 (0.0) <0.0>	0 (0.0) <0.0>	1 (33.3) <2.9>	0 (0.0) <0.0>	3 (100.0) <0.7>
(22)	0 (0.0) <0.0>	2 (100.0) <0.7>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2 (100.0) <0.4>
(23)	1 (20.0) <1.5>	3 (60.0) <1.1>	1 (20.0) <1.7>	0 (0.0) <0.0>	0 (0.0) <0.0>	0 (0.0) <0.0>	5 (100.0) <1.1>
(24)	0 (0.0) <0.0>	2 (66.7) <0.7>	1 (33.3) <1.7>	0 (0.0) <0.0>	0 (0.0) <0.0>	0 (0.0) <0.0>	3 (100.0) <0.7>
(25)	0 (0.0) <0.0>	2 (50.0) <0.7>	0 (0.0) <0.0>	1 (25.0) <11.1>	1 (25.0) <2.9>	0 (0.0) <0.0>	4 (100.0) <0.9>
(26)	0 (0.0) <0.0>	2 (66.7) <0.7>	1 (33.3) <1.7>	0 (0.0) <0.0>	0 (0.0) <0.0>	0 (0.0) <0.0>	3 (100.0) <0.7>
(99)	0 (0.0) <0.0>	3 (75.0) <1.1>	0 (0.0) <0.0>	0 (0.0) <0.0>	1 (25.0) <2.9>	0 (0.0) <0.0>	4 (100.0) <0.9>
합계	68 (15.1) <100.0>	273 (60.7) <100.0>	58 (12.9) <100.0>	9 (2.0) <100.0>	35 (7.8) <100.0>	7 (1.6) <100.0>	450 (100.0) <100.0>

주: 1. 전반적 지원제도의 (1)~(6)은 <표 IV-40>에서의 (1)~(6) 항목을 각각 의미하며, 동 조항의 (1)~(99)는 <표 IV-39>의 (1)~(99) 항목을 각각 의미함
2. ()는 동 조항 응답 항목에 대한 전반적 지원제도 응답 항목 비중을 의미하며, < >는 전반적 지원제도 응답 항목에 대한 동 조항 응답 항목 비중을 의미함

V. 현상 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



V. 현상 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건의 이용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효과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몰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함

- 제도가 이용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자체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 초기에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 인력이 성과물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벤처기업은 대부분 기술 기반의 연구원들로 시작하므로 재무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세무사에 의존도가 높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비단 이 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one-stop service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들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제도를 인지하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 43%였으며,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동 조항을 검토해 보았다는 응답이 약 62%로 나왔으나,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 제도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 58%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반응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비록 이용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제도가 있는 것 자체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임

-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바, 제도를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즉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과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은 동 조항에 대상 자격 등 부수되는 조건이 맞지 않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답변임
 - 노력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든가,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이러한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에 대비하여 과세이연된 양도세의 현재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동 조항을 인지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아니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치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기타소득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세 과세 이연에 따른 감면세액, 즉 세제혜택에 따른 기대수익이 얼마가 될지는 출자시점에서 불확실함
 - 미래 주식 가치의 상승이 클수록 기대되는 감면세액의 현재 가치가 커지겠으나, 미래 주식 가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수익보다는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자체가 매력적인 출자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라서 현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동 조항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함
 - 그것은 벤처기업은 대부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기 때문임

- 즉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보다 자기 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술 분야에 대한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재산권을 가진 제3자의 출자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을 가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자기 기업에 현물출자하여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출자 유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대기업 또는 자본력이 큰 회사에서 벤처기업을 만들어 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를 허용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남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응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유인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기술 가치의 평가를 제3의 공정한 기관⁶⁶⁾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미루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동 제도는 앞으로도 이용도가 전무하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일단 설문조사와 심층평가 인터뷰에서는 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크고, 현재 제도 이용이 안되는 이유로는 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②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봄
 - 이러한 개선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야 할 것임

66)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대안 1】 우선적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되,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함

-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전무하며, 유인의 측면에서 검토하여도 제3자인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세제혜택의 기대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설문조사 결과, 제도 자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통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미 컨설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one-stop service와 같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편하게 한군데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여타의 홍보 수단을 확보하여 벤처·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부족 등 그들이 처한 상황 또는 행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단기적으로는 홍보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만큼, 시행만 3년 후에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홍보의 효과를 점검한 후 일몰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임

【대안 2】 현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되, 오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역시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그 효과를 점검하고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함

- 동 조항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가운데 ‘대상이 아니라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줌
-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은 거의 없으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출자받는 것보다 차라리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가치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신의 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이 제3자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 특수관계인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을 적용한다면, 동 조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벤처기업에 현물을 출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이나 부적절한 가치 평가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일몰연장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VI. 결 론



VI. 결 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의 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이용된 실적이 하나도 없음
 - 결과적으로 제도의 효과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효과성의 검증보다는 동 제도가 전혀 이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음

-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러나 동시에 제도를 알았으면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응답과 이미 제도를 알고 있었던 응답자 가운데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제도 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의 반영이라고 판단됨

-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동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응답이 많은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대다수의 응답에 대응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나 컨설팅을 강화하되,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그 효과를 점검하는 방안
 - 둘째는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응답에 대응하여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몰기한 신설을 통하여 그 효과를 점검하는 방안

- 첫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one-stop service와 같이 벤처·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벤처·중소기업의 인력이나 자본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홍보 방식이나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인식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두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심층 인터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자체가 매력적인 출자방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 과세 이연으로 인한 세제혜택의 현재 가치를 출자시점에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소요되는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임
 -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를 세제혜택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그나마 벤처·중소기업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보유자가 대부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산업재산권을 자신의 기업에 현물출자할 유인이 있을 것임
- 김재진·기은선(2017), 김재진·홍범교(2014) 등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창업, 성장, M&A 단계 등 각 단계마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음
- 벤처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 보유, 양도 단계별로 많은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취지는 좋으나, 이미 수많은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부수 조건이 복잡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 동 조항이 이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단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되, 여전히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임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2018. 10.
- 김기완,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확인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1. 12
- 김세중,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12.
- 김재진·기은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
- 김재진·홍범교, 『창업·벤처투자 지원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 _____,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김진수·원종학, 『벤처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12.
- 이상엽·이창민, 『정책금융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방안: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투자동향」, 2019. 1. 24.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9년 6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9. 7.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or.kr>
- 벤처캐피탈협회, <http://www.kvca.or.kr>
-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

부 록



문 5. [공통] 귀하께서는 본 제도(‘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1. 지원 대상 범위 확대(제외 대상 조건 완화 등)
2.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3. 세금 혜택 조정 범위 확대
4.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5. 기타()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조세 제도 접근성

문 6. [공통] 귀하께서는 평소 조세 제도 혜택 등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 |
|--------------|----------------|
| 1. 매우 관심이 있다 | 2. 그럭저럭 관심이 있다 |
| 3. 별로 관심이 없다 | 4. 전혀 관심이 없다 |

문 7. [공통] 귀하께서는 평소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조세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십니까? (최대 3개까지)

- | | |
|------------------------|---------------------|
| 1.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 2.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
| 3. 세무서 | 4. 정부부처 |
| 5. 동종업체 |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 7.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 8. 협회 등 경제단체 |
| 9. 기타() | |

문 8. [공통] 본 제도 외에도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용 실적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의 조세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1. 세제혜택(세금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2. 제도에 대해 정확히(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3.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4. 기업 대표(대표일 경우엔 본인)가 선호하지 않음
5.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시간, 인력투입비용 등) 대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아서
6. 기타()

응답자 정보

※ 마지막으로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DQ1. [공통] 성별 (목소리로 확인)

1. 남성
2. 여성

DQ2. [공통] 직위

1. 대표이사
2. 임원/부서장(이사, 전무, 본부장)
3. 중간관리자(부장, 차장, 과장)
4. 대리, 주임, 사원

DQ3. [공통] 업종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도소매업
4. 기타업종

DQ4. [공통] 매출액(2018년 기준) : 약 _____ 억원